
2026년도
세입 · 세출 사업설명자료



농촌진흥청

목 차

I . 일반회계	1
1. 세입	3
2. 세출	17
(1) 본청인건비 (7101-100)	19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0)	21
(3)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0)	23
(4) 도서관운영(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4)	25
(5)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7131-300)	28
(6) 농업기술알림 (7132-300)	32
(7)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7133-570)	35
(8) 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2333-500)	37
(9)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정보화) (2333-502)	43
(10) 신품종지역적응연구(R&D) (1133-302)	47
(11)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1133-308)	54
(12)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1133-310)	58
(13) 저탄소그린라이프생산기술개발(R&D) (1133-414)	63
(14) 탄소저감환경보전형유기농업과유기자원재순환기술개발(R&D) (1133-415) ..	66
(15)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1133-429) ..	70

(16)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1133-433)	75
(17) 농자재관리및평가(R&D) (1134-300)	80
(18) 공공성확보를위한국가기반육종플랫폼개발(R&D) (1135-308)	85
(19) 시험연구활동지원(R&D) (1136-305)	88
(20)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R&D) (1136-315)	92
(21)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농진청)(R&D) (1136-326)	96
(22)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개발(R&D) (1136-338) ..	99
(23) 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 (1136-344)	103
(24)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제기반기술개발(R&D) (1136-356)	107
(25)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핵심기술개발(R&D) (1136-362)	110
(26)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1136-364) ..	115
(27)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1136-365)	119
(28)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최적기술개발및고도화(R&D) (1136-382) ..	123
(29)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1136-383)	126
(30)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1136-384) ·	131
(31)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R&D) (1147-300)	134
(32) K-농식품자원기능성성분활용기반고도화(R&D) (1147-303)	137
(33) 원예특용자원생산과품질표준화연구(R&D) (1147-304)	140
(34) 반려동물전주기고도화기술개발(R&D) (1147-307)	143
(35)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1147-330)	147
(36)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1147-342) ..	151

(37)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R&D) (1147-343)	158
(38)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R&D) (1147-344)	163
(39)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1147-345) ·	166
(40)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1147-347)	169
(41)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1147-424)	175
(42)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1147-429)	179
(43)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R&D) (1147-432)	183
(44) 민간연구개발지원(R&D) (1148-650)	186
(45)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R&D) (2332-305)	189
(46) 연구정책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2)	193
(47) 연구정책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2)	196
(48) 농업과학관운영 (7132-301)	199
(49)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1136-300)	202
(50) 치유농업확산센터기반구축 (1136-330)	205
(51)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2131 - 300)	208
(52)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2131-306)	211
(53)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2231-300)	214
(54)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2231-301)	217
(55) 농촌지원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227
(56) 농촌지원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1)	229
(57)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1133-435) ·	231

(58) 국제농업기술협력(R&D) (1136-311)	235
(59)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1136-312)	238
(60)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2333-201)	242
(61)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2334-300)	246
(62)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2334-307)	252
(63) 기술협력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3)	261
(64) 기술협력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3)	264
(65)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R&D) (1131-300)	267
(66)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1131-307)	270
(67) 농업과학기반연구정보화 (2333-503)	273
(68) 농업과학원 인건비(R&D) (7102-100)	277
(69) 농업과학원 기본경비(R&D, 총액인건비대상) (7118-200)	279
(70) 농업과학원 기본경비(R&D, 총액인건비비대상) (7118-250)	281
(71) 작물시험연구(R&D) (1132-300)	283
(72) 작물연구정보화(정보화) (2333-504)	286
(73) 식량과학원인건비(7102-101)	291
(74) 식량과학원 기본경비(R&D,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293
(75) 식량과학원 기본경비(R&D,총액인건비비대상) (7118-251)	295
(76) 농업과학기술교육 (2431-303)	297
(77)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인건비 (7102-102)	300
(78)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2)	302

(79)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8-252)	304
(80)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기반구축 (1136-318)	306
(81) 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R&D,책임운영) (1231-100)	309
(82)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1231-200)	311
(83)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1231-250)	314
(84) 원예특작시험연구(R&D, 책임운영) (1231-300)	317
(85) 과속채소연구소구축(R&D) (1231-306)	321
(86) 원예연구정보화(정보화,책임운영) (1231-500)	324
(87) 축산과학원인건비(R&D,책임운영) (1232-100)	328
(88) 축산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1232-200)	330
(89) 축산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1232-250)	332
(90) 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1232-300)	334
(91)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 (1232-305)	338
(92) 축산연구정보화 (1232-500)	342

II.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7

1. 세입	349
2. 세출	354
(1) 고객현장지원 (7136-300)	356
(2)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232-300)	359
(3)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433-300)	363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67
1. 세입	369
2. 세출	379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R&D, 보조, 지역자율) (1139-301)	381
(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2233-300)	386
(3)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0)	389
(4)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보조, 지역지원) (1139-302)	392
(5) 신기술보급사업(보조) (2131 - 301)	398
(6)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2234-301)	401
(7) 농촌자원소득화지원 (2234-305)	404
(8) 농산업교육훈련지원 (2431-301)	408
(9)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R&D, 제주, 지역자율) (1140-301)	412
(1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제주, 지역지원) (1140-302)	418
(11)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2235-300)	424
(12)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4)	428
(13)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세종) (2237-301)	432
(14)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5)	435

I . 일반회계

1. 세 입

토지대여료
51 - 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토지대여료	43	32	32	43	43	11	34.4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토지) 유상사용료 징수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32,000	국유재산(토지) 유상사용료
2026예산	43,000	국유재산(토지) 유상사용료

건물대여료
51 - 512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건물대여료	55	44	44	56	56	12	27.3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건물) 유상사용료 징수

다. 2026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44,000	본청 및 소속기관 건물 유상사용료(매점, 농협 등)
2026예산	56,000	본청 및 소속기관 건물 유상사용료(매점, 농협 등)

기타관유물대여료
51 - 513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기타관유물 대여료	-	-	1	1	1	100.0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다. 2025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	
2026예산	1	시험연구장비 등 대여료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310	558	558	809	809	251	45.0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계좌 등 이자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558,000	보조금 및 출연금 이자
2026예산	809,000	보조금 및 출연금 이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 - 547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외수입	462	448	448	648	648	200	44.6

가. 법적 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품종보호료)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 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품종 해외로열티
- 국유품종보호권 실시료
- 특허 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료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448,000	국유품종보호권 실시료 및 로열티
2026예산	648,000	국유품종보호권 실시료 및 로열티, 특허실시료

과태료
56 - 563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과태료	-	4	4	4	4	-	-

가. 법적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세입 개요

- 미검정 또는 부적합판정 농업기계의 제조·수입·판매 과태료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4,000	미검정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 과태료
2026예산	4,000	미검정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 과태료

위약금
57 - 572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위약금	10	119	119	54	54	△ 65	△ 54.6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공사 및 물품납품 지체상금,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징수 등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119,000	공사 및 물품 납품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2026예산	54,000	공사 및 물품 납품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5,830	7,216	7,216	6,549	6,549	△ 667	△ 9.2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및 공동 연구과제 연구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환수 등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7,216,000	국고보조금 정산금 4,000,000 연구개발비 정산금 3,000,000 출연금 지원 기술료 50,000 기타 과오납 반납금, 정산금 등 166,000
2026예산	6,549,000	국고보조금 정산금 4,000,000 연구개발비 정산금 2,000,000 출연금 지원 기술료 50,000 기타 과오납 반납금, 정산금 등 499,000

면허료및수수료
65-65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49	45	45	42	42	△3	△6.7
13-65-651	26	29	29	26	26	△3	△10.3
14-65-651	23	16	16	16	16	-	-

가. 법적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축산법 제12조(수정사의 면허) 및 제4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
- 국고금 관리법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고시 2021-39호)

나. 세입 개요

- 공무원 채용시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료
- 시험, 재배 등 위탁(연구) 수수료(수입대체경비)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45,000	공채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료 7,000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료 22,000 시험, 재배 등 위탁(연구) 수수료(수입대체경비) 16,000
2026예산	42,000	경채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료 7,000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응시료 22,000 시험, 재배 등 위탁(연구) 수수료(수입대체경비) 16,000

실습수입
68 - 68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실습수입	3,272	3,164	3,164	3,164	3,164	-	-

가. 법적 근거

- 생산물 관리에 관한 훈령(농진청 훈령) 제8조(생산물 처분) ② 보급용은 유상분양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매각용은 소속기관의 운영지원부서에서 공판장 또는 판매업체 등에 매각한다.

나. 세입 개요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농업 관련 시험연구 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부산물의 유상분양 및 판매 수입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3,164,000	국립농업과학원 정조, 배추, 콩 등 생산물 처분 국립식량과학원 정조, 쌀보리, 밀 등 생산물 처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참다래, 마늘, 양파 등 생산물 처분 국립축산과학원 도태 한우, 젓소, 돼지 등 처분 '22년 결산액 3,196백만원×(1-0.01)
2026예산	3,164,000	국립농업과학원 정조, 배추, 콩 등 생산물 처분 국립식량과학원 정조, 쌀보리, 밀 등 생산물 처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참다래, 마늘, 양파 등 생산물 처분 국립축산과학원 도태 한우, 젓소, 돼지 등 처분

기타잡수입
69 - 69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잡수입	159	293	293	212	212	△ 81	△ 27.6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9조 (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시설공사 부산물 등 매각대금
- 기타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293,000	기타 잡품 매각대 173,000 미생물균주 기탁 수수료 120,000
2026예산	212,000	기타 잡품 매각대 102,000 미생물균주 기탁 수수료 110,000

기타고정자산매각대
71 - 713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30	100	100	53	53	△47	△47.0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39조 (매각의 특례)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내용연수 초과 관용차량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100,000	불용물품(내용연수 1년이상) 매각대
2026예산	53,000	불용물품(내용연수 1년이상) 매각대

2. 세출

사 업 명
(1) 본청인건비 (71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운영지원과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0
명칭	기관운영및사업지원	본청인건비	본청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본청인건비	32,752	39,512	39,512	42,278	37,889	△1,623	△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청 공무원 및 청원경찰 보수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503호)
- ② 추진경위 - 1962.4. 농촌진흥청 발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해	당	없	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운영지원과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0
명칭	기관운영및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008	2,182	2,182	2,332	2,332	150	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액인건비 대상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503호)
- ② 추진경위 - 1962.4. 농촌진흥청 발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해	당	없	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운영지원과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기관운영및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4,772	5,177	5,177	5,332	5,240	63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감사담당관실 총액인건비 비대상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503호)
- ② 추진경위 - 1962.4. 농촌진흥청 발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해	당	없	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도서관운영(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4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도서관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도서관운영 (총액인건비비대상)	481	482	482	496	482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도서관운영) 국내외 농업과학 분야 전자정보 및 학술자료 등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구축하고, 농업과학 연구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국가 대표 농업과학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 제5조, 제15조, 제41조, 제42조 등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전문도서관·특수도서관의 설치 등) ②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다른 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3.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2조(도서관의 날) ①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며,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독서문화진흥법(법 제19794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추진년도 : 1970 ~ 계속
- 추진배경 및 중점과제

- 국내외 농업과학 학술정보 웹 DB 구독 및 정보 제공
- 농업과학기술 연구지원정보서비스 제공 및 연구역량강화 교육 실시
- 우리청 간행물 발간등록부터 수집·보존까지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청 주요 발간자료의 무료 원문서비스 및 판매시스템(농서남북) 운영
-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운영
- 우편대출, 책마중, 특별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대출 서비스
- 전문가 초청강연 등 이용자 참여형 문화행사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7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71	481	481	482	48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연구원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5)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7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촌진흥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1	300
명칭	기관운영및사업지원	성과관리및능력개발	성과관리및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성과관리및능력개발	620	531	531	531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과관리 및 능력개발)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보급 사업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실용분석을

- 통하여 농촌진흥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
-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공무원 성과향상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부처 차원의 혁신 및 변화관리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혁신역량, 리더십, 성과관리 능력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5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 실태 및 그 결과가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훈령)

제3조(평가 계획의 수립) 제3조(평가 계획의 수립)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에게 시달한다.

② 평가 기본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및 절차
3.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4. 평가 방법 및 위원회 구성
5. 성과 평가 지표
6. 평가결과의 환류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③ 소속기관장 및 사업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 및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따른 「농촌진흥청 정부혁신 실행계획」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추진경위

- 2004년부터 통합적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반기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제출 의무화(국무조정실)
- 우리 청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인사·정보화 분야의 행정관리 역량을 자체 진단하고, 평가결과 제출(행정안전부)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정부혁신의 비전과 철학을 전파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시행(행정안전부)
-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 정착을 위하여 정부혁신을 정부업무평가(부서별 종합평가)에 반영(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2	532	631	531	53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 농업기술알림 (7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0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농촌진흥사업지원	농업기술알림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기술알림	2,325	2,465	2,599	2,599	134	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기술알림) 새로운 농업기술 및 유익한 영농정보 등의 농촌 진흥사업시책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확대함
- 농업·농촌의 중요성 등 국민 생활에 유용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및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
- 온라인 고객 맞춤형 K-농업기술 우수사례 콘텐츠 제작·공급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SNS 등 디지털 홍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 제7조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9조 정기간행물의 발간, 제10조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제12조 홍보교육 등, 제4장 언론의 취재 지원 등(취재지원, 언론에 대한 브리핑 등, 정책보도 모니터링 등)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1843호) 제6조(대변인)

② 추진경위

- 농업·농촌의 가치 홍보 및 우리 농산물소비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업비로 전환(2007)
- 농업기술개발 우수성과 확산(7134-300, 농특회계) 사업 이관 통합(2010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88	2,198	2,354	2,465	2,5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소비자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7)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7133-57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운영지원과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570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청사확보 및 시설개선	4,176	4,248	4,248	4,441	4,441	193	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설관리)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건물 내구연한 연장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직장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영유아보육법
- ② 추진경위
 - 청사의 효율적 운용 및 유지관리
 - 직장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으로 직원복지 향상('02년 개원)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61	3,788	4,215	4,248	4,441

- 기타 :
 - 시설관리 : 건물 19개동(49,921.75㎡), 부지 27필지(283,557㎡)
 - 직장어린이집 운영 : '26년 보육 예정 인원 210명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시설관리), 위탁(직장어린이집 운영)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시설관리), 우석대학교(직장어린이집 운영)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우석대학교	1,105	5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사 업 명						
(8) 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2333-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500
명칭	농가경영능력 향상	농촌진흥사업정보화	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기술정보화 (정보화)	7,974	7,273	7,050	6,823	△450	△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기술정보화) 청의 연구개발 사업, 농촌지도 사업 등 핵심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농업기술의 효율적인 대국민 보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 (맞춤형 농업기술 콘텐츠 확충) 우리 청 농업기술을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여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일반인 등이 농업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구축 사업
-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운영) 과학영농시설, 영농상담, 교육정보 등 농업과학기술 정보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농촌 지도사업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
- (치유농업정보망 운영) 치유농업 소개, 치유농업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등 국민의 건강 회복·유지·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문제출제, 합격자 관리 등 시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차세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연구과제, 연구장비, 전자연구노트, 연구성과, 과제평가 등 농촌진흥청 고유연구개발사업 전반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운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기술 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농업 정보를 찾는 농업인, 일반인 등의 시간과 노력 절감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 분야 전문 포털 '농사로' 등 농업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 (연구행정정보시스템 통합운영) 물품구매, 근로자 관리, 차량·회의실 등 신청, 공무국외출장, 채용시험 등 각종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업무시스템 운영
- (농업과학기술전자도서관 운영) 국내·외 농업과학기술 학술자료 및 농촌진흥청 발간도서 등 문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여 농업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 (사물인터넷 작물 정밀관리기술정보 서비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최적 환경설정 안내 등 데이터 기반 작물 관리 기술 정보서비스 운영
- (농업경영종합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농업경영체의 경영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기여를 위한 농업 경영정보 제공·관리 시스템 운영
- (행정업무 자동화 서비스 운영) 급여 계산, 통계자료 수집, 데이터 입력, 파일 전송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로봇') 기반 자동화 서비스 운영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농약 등록, 생산, 판매 등 농약 유통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 유도 및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을 통한 사전 예방 및 발생한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진단·조치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병해충 정보 제공·관리 시스템 운영
- (농업공간정보서비스 운영) 기상·병해충·토양 등 농업분야 공간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한 농업인·연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운영
- (농업 데이터 플랫폼 운영) 농업 분야 국가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저장·공유·개방을 위한 플랫폼 운영
- (농업재해정보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ISP 수립) 농업재해에 선제적인 대응 및 농업인 피해 최소화 지원을 위한 농업재해 토탈 원스톱 서비스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디지털육종 기반 강화 및 서비스 구축 ISP 수립)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디지털육종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기관운영비)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여비 등 기본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치유농업법(법률 제19491호)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법률 제20231호) 제23조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업과학기술정보법(법률 제19484호) 제8조(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관리·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20354호)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2호) 제23조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8년도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작하여 '00년도에 본예산 반영
- '01~'04 : 1차 정보화발전 전략계획(ISP) 추진
(농업기술정보DB 구축 및 응용시스템 개발)
- '05~'07 : 2차 정보화발전 전략계획(ISP) 추진
(정보서비스 고도화 및 통합·연계서비스시스템 구축)
- '08~'11 : 3차 정보화발전 전략계획(ISP) 및 EA 수립(정보자원 활용체계 구축 및 활용)
- '12~'16 : 4차 정보화발전 전략계획(ISP) 및 국가 농업기술 정보네트워크 구축 등
- '17~'18 : 5차 정보화발전 전략계획(ISP) 수립, AI 및 IoT 등 지능정보 기반 마련
- '18~'22 :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 '23~'25 : 국정과제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세부 과제 추진
(농업R&D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001	9,765	8,006	7,273	6,82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등 대국민, 농업관련 업체, 농촌진흥청 직원,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9)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정보화) (2333-5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0	502
명칭	농가경영능력 향상	농촌진흥사업정보화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 (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기술정보 네트워크운영 (정보화)	10,796	6,932	6,180	6,003	△ 929	△ 1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기술정보네트워크운영) 농촌진흥 사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운영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
-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청과 소속기관의 국가정보통신망 등 이용대금 지원
-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무자동화기기, 업무용S/W 및 각종 노후화 전산장비 교체
- (정보통신시스템 유지운영) 사이버 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사이버안보센터 유지·운영 및 서버·네트워크·정보보호 시스템 등 각종 장비 유지·운영
- (농업과학기술교육정보화 유지운영)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전산장비 및 기관 홈페이지·교육시스템(e-HRD) 등 유지·운영
- (기타운영비)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한 인건비, 여비 등 기본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화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410호)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제8조(사이버안보기본대책의 수립·시행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 및 보안수준 등을 반영하여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70년 : 농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의 효율화와 정밀성 확보를 위하여 농사시험 연구분석용 전산기 도입(FACOM, 230/10)
- 1978~1989 : 주전산기 도입·운영 및 농사시험연구자료 배치처리
- 1990~1995 : WAN 구축, 온라인 처리 및 PC통신서비스
- 1995~1999 : 각 연구기관 DB화 추진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실시
- 2000~2002 : ATM통신망 구축
- 2003~2005 : 내부 업무포탈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관제시스템 구축
- 2006~2007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및 WAN가속기 도입, 노후장비 교체
- 2008~2009 : 웹방화벽 및 USB보안시스템 도입 등 보안 고도화
- 2010 : 농촌진흥청 보안관제센터 구축, 본청 네트워크 분리 및 전산시스템 도입
- 2011 : 농업기술정보 통합인증체계 및 웹소스보안관리시스템 구축
- 2012 : 농업정보화 운영장비 및 회의중계시스템 고도화
- 2013~2014 :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전북혁신도시 이전 및 망분리 실시
- 2015 : 24시간 × 365일 사이버안전센터 무중단 보안관제 체계 시행
- 2016~2017 :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및 정보보호 고도화

- 2018 : 2차 망분리 실시 및 정보보호 시스템 고도화
- 2019 :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시스템(SIEM) 구축 및 운영
- 2020 :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및 무선 연구망 시범 구축
- 2021 : 내부 네트워크 구간 통신환경 개선 및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 2022 : 국가 융합망 구축 및 운영
- 2023 : 중요 연구자료 보안 네트워크 구축 및 노후 장비 고도화
- 2024~현재 :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국가 클라우드(대구센터) 이전(2024)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차세대 e-HRD 시스템 구축(2024~20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7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16	5,889	10,821	6,932	6,00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직원, 농업·농촌 관련 업체 및 농업인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10) 신품종지역적응연구(R&D) (1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신품종지역적응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신품종지역적응연구(R&D)	15,507	20,529	25,349	25,349	4,820	2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식량자급률 향상 및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신품종 개발 및 이용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 (신품종개발공동연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지역적응성 연구 및 개발된 품종의 이용촉진을 위한 종자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농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연구
- (농업생명자원국가관리기관운영)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운영
-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 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과 국내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립종 벼 생산기반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 1. 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34357호, 2024. 3. 26.)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物)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0. 1. 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조 품종보호 대상(법률 제16785호, 2019.12.10.)

제3조(품종보호 대상)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 품종성능의 심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5호, 2023. 12. 27.)

제6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 6. 23.>

1. 심사의 종류 / 2. 재배시험기간 / 3. 재배시험지역 / 4. 표준품종 / 5. 평가형질 / 6. 평가기준

- 종자산업법 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 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12. 27.>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이라 한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3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법률 제19118호, 2022. 12. 27.)

제13조의3(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8.>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3호, 2024. 3. 26.)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에 관한 수요 조사 및 해당 품종의 개발·보급
2.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재배기술 교육 및 지원
3.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 및 식품 가공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식품의 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5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운영 등(법률 제16543호, 2019.8.27.)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1. 농업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7.>

1. 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7.>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법률 제16473호, 2019. 8. 20.)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
 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 기술개발
 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4. 화훼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법률 제16116호, 2018.12.31.)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꿀벌 신제품 육성 등(법률 제19709호, 2023. 9. 14.)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1980년 공동연구사업 연구정책국 주관으로 지역적응시험 시행
- 2009년 농업기술공동연구 → 국책기술개발로 명칭변경
- 2013년 신품종개발과 종자생산체계구축 성과목표에 맞도록 국책기술개발로부터 사업을 분리하고 국과위 협의를 거쳐 원예작물로열티, 청보리, 녹비, 약용작물 등 종자생산 및 보급체계구축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신품종 개발과 종자생산체계 두 개 분야 사업 추진
- 2014년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 내역사업을 차세대바이오그린21로부터 인수
- 2015년 사료작물 생산체계 확립 및 이용확대 연구 신규사업 추진하고 또한, 수밀력이 우수한 벌꿀 품종 육성을 위해 ‘꿀벌 신품종 개발 및 이용촉진사업’을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 내역사업에 신규 세부과제로 추가하여 추진
- 2016년 ‘원예작물 로열티대응 기술개발’ 후속사업으로 ‘화훼, 특용작물 품종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내역사업 신규 추진
- 2017년 ‘약용작물 우량종자 생산기술개발’ 내역사업 신규 추진
- 2020년 ‘고위도 지역 작물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내역사업 신규 추진
- 2025년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프로젝트’ 내역사업 신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017	21,017	15,529	20,529	25,3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1)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R&D) (1133-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8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신농업기후변화대 응체계 구축(R&D)	21,675	23,880	23,270	23,257	△ 623	△ 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新기후체제(Post-2020)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정밀 예측 기반의 농업생산기술 개발 및 선제적 재해대응체계 구축으로 국가식량안보 구현
- (농업부문 생산환경 변동예측 및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생산성, 농업생태계 실태조사, 영향/취약성 평가, 작물생육 및 변동평가를 통한 농업부문 단기, 장기의 미래 예측 기술개발 및 정보 제공
- (기후적응형 농축산 재배사양기술 개발) 한반도 아열대화에 따른 지역별 기후적응 작목배치, 작물재배체계, 신문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기후적응형 육종소재 개발 및 아열대 작물 육성, 축산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
- (농업기상재해 피해저감기술 개발) 이상기상 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체계 구축, 작물 피해 경감기술 및 내재해 농업시설 개발, 가뭄대응 최적 관개기술 개발 등 사전·즉시·사후 대응기술 개발로 안정적 농업생산체계 구축
- (기후변화 완화 및 저탄소농업기술 개발)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계측 고도화, 농축산 부문 탄소배출·흡수량 평가 및 감축기술의 현장 실용화,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 달성 등 신기후체제 대응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8531호, 2021.11.30.)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법률 제18531호, 2021.11.30.)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33017호, 2022.1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

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기획 추진('17.5.16.~'18.8.7.)
- '18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 제출(과기정통부, '18.8.8.)
- 기술성평가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18.9.18.)
- 예타 사업설명회('18.11.1.) 및 질의답변자료 제출
- 1차 중간보고회('19.2.20) 및 2차 중간보고회('19.3.20)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19.3.28.)
 - ☞ B/C 0.61(AHP 0.726), 조정금액 농진청 2009.1억/8년('20~'27)
-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정과제 68)
 - *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활용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국정과제 69)
 -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취약성 평가, 적응 재배지 변동지도 서비스 확대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기본계획('23.3), 제3차 국가 기후위기적응 강화대책('21~'2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17~'30),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차 '20~'24, 3차 '25~'29)에 반영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868.1억원
- 사업기간 : '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625	24,400	21,675	23,880	23,2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2)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1133-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1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국가농업환경종합 관리기술개발(R&D)	-	-	4,025	4,025	4,025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농업환경 종합관리 기술 개발) 국가·지역 농업환경에 대한 주기적 조사·평가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를 실시하여 농업환경의 상태와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농진청 위임업무). 조사 결과 및 자료 DB를 활용하여 농업환경 정책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효과 평가, 환류·개선 등 종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양관리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로 농업환경 보전 및 작물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임
- (농업환경 모니터링 및 변동평가 기술개발) 농업 자원·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가·지역단위 농업환경의 건전성·지속 가능성 평가기술 개발
- (농업환경보전 정책지원기술개발) 공익직불제 및 친환경농업 정책지원 기술개발 및 효과성·경제성 종합평가 기술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친환경농어업법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및 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비료·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5조(농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제5조(농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평가의 방법·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평가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라 한다)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4. 그 밖에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4-31호)
 - (목적) 친환경농어업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농식품부)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 제6차('26~'30) 계획 수립 중
- 농촌진흥청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 (농식품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21.12.), (농진청)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개발보급 추진전략('21.12.)

② 추진경위

- (사업기획) 농업환경정보 종합해석 및 정책활용 확대를 위한 개선안 도출 연구용역 2건 추진('24)
- (과제1) 농업환경 변동조사의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종합평가 체계 수립

☞ 조사결과 활용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방향 및 정책활용 방안 제시

- 과거 조사DB의 항목간 복합분석 수행, 보고양식, 조사개선(안) 제시
 - * 연계분석 결과(표·그래프, 통계), 종합보고서 양식(목차), 조사지점 통합(안) 제시
- 보고서, DB 검토를 통한 현안(농업·환경)별 소관부처·법령 및 정책발굴

- (과제2) 농촌공간정보를 연계한 농업환경자원 실태조사 적정 대표표본 선정

☞ 농촌공간정보(농산물소득조사·농업환경)를 연계한 조사 대표표본 선정

- 과거와 현재 조사지점 간 중첩률, 조사수 적정여부(대표성) 평가
 - * (중첩률) 6차('21~'25년) 토양화학성 비교: 2차('03~'06) 0-7%, 3차('07~'10) 15-30%
 - * 표본 수: (적정) 토양화학성, (부족) 물리성(現 1,367→1,982)·미생물(現 873→2,873)
- 통합 대표표본(논·밭·과수·시설) 선정: 작물·농법·환경 고려, 지점변경 최소화
 - * 표준유역(125개), 6항목(화학·물리·미생물·비료사용·농약·생물상) 지점(8,899개)

- (필요성) 기후변화·재배여건 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정밀 관리기술개발과 공익직불제 등 농업환경정책사업의 성과평가 기술개발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달성과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할 과제임, 농업부문 NDC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토양과 작물 특성을 반영한 질소비료 사용량 적정화를 위한 비료사용기준 설정 및 토양검정·비료사용처방서 활용 사업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0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3)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R&D) (1133-4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14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저탄소 그린라이스 생산기술 개발(R&D)	1,732	1,732	1,559	1,559	△173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탄소 그린라이프 생산기술 개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29.7%인 벼 농사에서 메탄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 50%감축 적용 벼 소재 및 벼 재배환경에서 메탄발생 저감기술 개발
- (질소소비 저감 대응 수량·품질 유지기술 개발) 질소비료 50% 감축에도 수량성 500kg/10a 이상 및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육종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 (벼-생태환경 오믹스 조절을 통한 메탄 방출 저감기술) 기후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의무화에 대응한 벼 메탄가스 발생량 저감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소재 및 분자생물학적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32503호, 2022.2.22.)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농촌의 현장으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物)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농촌의 현장으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경위

-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10)과 추진전략 발표
-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21.4, 농특위)
 - * 화학비료 50% 감축,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30)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23.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25), 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1~'25) 계획에 반영 추진
 - * 공익직불제 연계 화학비료 사용량 : ('18)268kg/ha→('24)421(10%↓)→('30)198(26%↓)
 -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30)
-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국정과제 68)
 -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국정과제 69)
 - *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0	5,233	1,732	1,732	1,5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4) 탄소저감환경보전형유기농업과유기자원재순환기술개발(R&D) (1133-4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1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탄소저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탄소저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 기술개발(R&D)	1,940	1,940	1,746	1,746	△194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탄소저감 환경보전형 유기농업과 유기자원 재순환 기술 개발) 탄소저감형 유기농 환경보전기술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유기농업 현장 기반 구축 및 기술보급 확대, 저탄소 유기자원 재순환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탄소저감형 유기농 환경보전기술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기농업 현장에서의 탄소저감 효과 및 경제적·환경적·공익적 가치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
- (유기농업 현장 기반 구축 및 기술보급 확대) 비료 사용량 절감에 대응하고 유기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해 관련 기반 기술 구축 및 병해충의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유기농 병해충방제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수입대체 유기농업 원자재 생산·활용기술 개발로 농가 경영비 부담 절감
- (저탄소 유기자원 재순환 및 실용화 기술 개발) 농축산부산물을 사용하여 양질의 퇴비와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과 농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순환을 위해 국산원료 활용 온실가스 발생 저감 퇴비 제조기술 및 토양 내 탄소 축적 평가, 소규모 단위의 저탄소 경축순환형 유기농업 모델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로 활용하고 저탄소 유기농 경축순환 모델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친환경농어업법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법률 제18445호, 2021.8.17.)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친환경농어업법 제13조 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법률 제18445호, 2021.8.17.)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20.12, UN제출)

* 농축산부문 : 저탄소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저투입 농업 등 포함)

○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21.4, 농특위)

* 탈탄소·생태(유기)농업전환 ⇒ 화학비료 50% 감축,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30)

○ 2026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 과기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 임무 해결: ⑧ 탄소중립 기술을 선도하여 기후 대응 임무 달성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폐기물 발생 억제, 폐자원 순환이용성 향상 및 재활용 기술 개발 투자 강화(환경·기상분야)

- (기본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 전략 3. 농업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 * 3-2. 탄소중립·환경 친화적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정책)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6~'30)
-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급 확대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림축산업 발전

② 추진경위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28) 및 범정부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발표('20.12.7) 등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
 - 농업부문의 탄소저감 이행수단* 실천 및 현장 실용화 확대 시급
 - * 친환경 생태농업, 저투입농법(화학비료 감축, 가축분뇨 자원화 등), 토양탄소 저장, 탄소저감 농업기술 개발의 현장 보급, 기술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0	7,000	1,940	1,940	1,7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5)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1133-4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29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 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중점관리병해충선제 대응및피해경감기술 실용화(R&D)	-	7,900	10,533	10,533	2,633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점관리 병해충 선제 대응 및 피해경감 기술 실용화) 과수화상병 등 주요 문제 병해충 해결을 위한 개발 기술의 현장실용화, 국내 중점관리·유입우려 병해충의 방제 기술 개발, 병해충 무인 예찰·예측 기술 및 방제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 (과수화상병 등 피해경감 개발 기술 실용화(2단계))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위험 분석 및 1단계 사업에서 기개발된 방제기술의 현장 실용화
- (고위험 병해충 확산 방지 기술 개발) 다발생·위험도가 큰 병해충의 현장 대응 기술 개발 및 국내 유입·정착 가능 병해충 사전 대응 기술 개발
- (병해충 디지털 예찰·예측 기술 개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병해충 예찰, 예측, 예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이며, 병해충 영상진단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진단, 예찰을 위한 병해충 발생 정보 자동 수집 신기술 개발, 병해충 고정밀 예측모델 및 개발지원 시스템 개발, 병해충 예보·방제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선 연구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4(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

제3조의4(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②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의 예산·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

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1호) 제10조 예찰계획의 수립, 제20조 방제계획의 수립

제10조(예찰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예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찰 대상 병해충 : 법 제32조제3항의 방제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2. 예찰내용 및 방법 등 :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이하 "농작물예찰·방제요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0조(방제계획의 수립)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제의 기본방향
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최근 문제 병해충의 발생 증가로 국가안전관리체계 강화 시급

- (병해충) 외래 병해충 국내 지속적 유입 및 화상병 등 공적방제 대상 증가

* 외래병해충 유입 : ('60년대) 3종 → ('70s) 8 → ('80s) 6 → ('90s) 15 → ('00s) 13 → ('10s) 19

* 최근 화상병('15), 열대거세미나방('19), 뿌리썩이선충('22), 뽕나방류('24) 등 신규 유입

- (농업환경) 병해충의 돌발적 발생 급증, 농업현장 병해충 전문가 부족 등에 따른 스마트 병해충 진단·예찰 기술 개발 필요

* ('21) '신동진' 벼의 도열병 변이 레이스 출현, ('23) '홍로' 사과 병해충 감수성 증가

- (성과연계) 선행사업 개발 기술의 현장 실용화 및 신속 보급 필요

* 과수화상병등현안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20~'24, 총사업비 477억원)

○ (필요성) 국가관리 대상 농작물 병해충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방제체계 구축 필요

- 고위험 병해충 대응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적 확대 필요

- 농작물 생산환경 변화 등으로 병해충 발생패턴·저항성·감수성이 달라져 주요 일반 병해충 모니터링 및 발생 정보의 현장 활용 미흡
- 농업현장의 급격한 세대교체로 예찰·방제 인력의 숙련된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AI 기반 디지털 기술 수요 급증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 전략 4.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 먹거리 공급기반 강화
 - * 4-4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급 확대
 -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9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7,900	10,5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6)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1133-4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33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기후변화대응생명 공학작물활용기술 개발(R&D)	-	-	4,200	4,200	4,2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후변화 대응 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 개발) 극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재해성 생명공학작물의 국가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 지원
- (농림축산업용 LMO 국가 안전관리)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작물재배환경 안전관리 기술개발, 유전자교정생물체 안전성 평가 및 분석 기술 개발 등을 추진
-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 신작물 육성평가) 기후적응형 자원 선발 및 농업형질 통합 점정 기술개발, 디지털 융합 차세대 소재 육성 기술개발, 글로벌 시장용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 슈퍼종자 개발 등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8조 [법률 제15878호, 2018.12.11.] 및 시행령 제26조의2

법률 제28조(정보 보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가책임기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정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가 도난·누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업무의 범위 및 절차의 합리성에 관한 정보
2. 위해성평가기관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3. 위해성평가 관련 전담조직·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규모 및 수준에 관한 정보
4. 위해성평가 관련 연구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에 관한 정보
5. 재무적 안정성에 관한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법률 제19990호, 2024.1.9.]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종자산업법 제7조 [법률 제19119호, 2022.12.27.]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 [법률 제20257호, 2024.2.13.]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및 생명공학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7조 [법률 제19878호, 2024.1.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법률 제18075호, 2021.4.20.]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률 제19874호, 2025.1.2.]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공약사항)

* **[성장-5-12]** ②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의 전파자인 침입외래종 관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생물안보(Biosecurity) 강화 추진 / GMO관리 역할 강화

* **[성장-4-18]** ②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미래 농산업 육성

* **[행복-2-7]** ②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 품종개발 등

- (국정과제)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실천과제)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실천과제) ②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 '25, 과기부)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정밀 육종 기술 활용 신품종 종자 개발 등 투자 확대, 식량안보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과학 연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4,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7) 농자재관리및평가(R&D) (11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4	30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관리 및 평가(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농자재관리 및 평가(R&D)	16,924	12,794	9,736	9,736	△3,058	△2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의 평가, 등록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농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양질의 농자재 공급 및 유통체계 확립
-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PLS 대응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국민 먹거리 안전성 향상을 위해 등록 농약이 없거나 부족한 소(小)면적 작물에 농약 직권등록 추진
- (농자재관리 및 평가) 농자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자재의 등록업무, 평가, 사후관리(유통·품질관리)를 통한 농자재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약관리법 제8~17조의5, 제24조(법률 제20231호, 2024. 2. 6.)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① 제조업자가 농약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품목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농약의 약효, 약해(藥害), 독성(毒性) 및 잔류성(殘留性)에 관한 시험 성적을 적은 서류(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식물보호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 13. (생략)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농약의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 및 농약 시료의 검사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그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 9. (생략)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①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등록증 및 변경내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품목등록제조업자는 품목의 등록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품목변경등록에 관련된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및 반려 등과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 ⑥ (생략)

⑦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제3호에 규정된 품목등록사항 중 적용 대상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와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에 관한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3. 10. 24.>

제16조(원제의 등록 등) 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면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①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종류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17조의2(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농약활용기자재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제품별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의 등록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4(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3(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1. ~ 농약 제조업·수입업·판매업·수출입식품방제업등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⑨ (생략)

제24조(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제3조제1항 전단 또는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수입·보관·진열·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2., 2011. 7. 25., 2021. 6. 15.>

② ~ ⑨ (생략)

- 비료관리법 제4조, 제4조의2, 제6조(법률 제18690호, 2022. 1. 4.)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생산·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효과와 피해, 중금속 및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등에 관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시험·분석 업무를 하려는 자는 4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지정 신청의 절차,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환경 보호 및 비료 개발) 농업환경 및 토양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별·작물별 비료의 개발 촉진과 품질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5, 제12조(법률 제19485호, 2024. 6. 21.)

제6조의2(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1.]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팩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1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④ 삭제 <2023. 7. 25.>

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제목개정 2009. 4. 1.]

제9조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지정하여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폐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4.]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대통령령 제31925호, 2021.8.3.)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 3. 3., 2015. 7. 24., 2017. 1. 26., 2017. 7. 26., 2021. 8. 3.>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상임전문위원의 임명·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운영
-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② 추진경위

- 2012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에 따라 여러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던 농자재 관련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시험연구활동 지원에서 사업분리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적에 따라 여러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던 농자재 관련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2012년 과목구조개편을 통해 시험연구활동지원으로부터 사업분리
- 2016년 국책기술개발의 '소면적작물 농약직권등록' 내역사업 이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206	19,824	17,066	12,794	9,7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8) 공공성확보를위한국가기반육종플랫폼개발(R&D) (1135-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8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차세대바이오그린21	공공성확보를위한국가기반 육종플랫폼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공공성확보를위한 국가기반육종플랫폼 개발(R&D)	6,260	6,976	7,008	7,008	32	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기반 육종플랫폼 개발) 디지털육종 기술기반 구축과 실용화 조기구현을 통한 국내 육종기술 경쟁력 확보 및 민간 주도 종자산업 활성화
- (국가 표준 육종 빅데이터 확보 및 딥데이터 구축) 데이터 표준 확립 및 기존 데이터 표준화, 표현체 빅데이터 수집·분석 기술 개발, 오픈스 통합 딥데이터 확보 체계 개발
- (딥데이터 처리 및 연계 기술 개발) 슈퍼컴퓨터 기반 고속·대량 딥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딥데이터 연계·제공 및 맞춤형 활용 기술 개발
- (AI활용 유망계통선발 플랫폼 기술 개발) 작물 딥데이터 기반 우수 계통 선발 플랫폼 기술 개발, 가축 딥데이터 기반 형질 개량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령) 과학기술기본법(11조), 생명공학육성법(13조), 농촌진흥법(7조), 농림수산물 과학기술육성법(6조), 종자산업법(7조), 식품산업진흥법(8조), 그린바이오산업법(11조)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부합
- (상위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제2차 농림식품 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제6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 중장기기본계획 등
- (투자방향)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 과기부)
 - 디지털 기술 활용 생명 자원·정보 활용도 제고
 - * 기후변화 대응 품종자원·유전정보 구축 체계화 및 디지털 정밀육종 활용 종자 개발
- (기본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 전략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 * 2-1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농생명공학 활용 원천기술 개발

② 추진경위

- 빅데이터·AI 기반으로 육종기술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 중으로 최근 육종이 생명 공학뿐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함께 활용되는 융복합 기술로

고도화되는 추세가 가속화

- 지금까지 개발된 육종기술과 빅데이터·AI가 결합하는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육종 패러다임 전환으로 육종 한계를 극복
- 청 디지털육종 추진 계획 수립 작업반(TF) 운영 계획 보고('21.2.23)
- 청 디지털육종 종합계획 보고('21.9.15) 및 디지털육종 확산을 위한 협의회 운영
- 부·청 디지털육종 중소형사업 협력 협의('22.3.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511	6,296	6,976	7,0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시험연구활동지원(R&D) (1136-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 육성	시험연구활동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시험연구활동지원(R&D)	5,046	6,996	7,071	7,071	75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연구활동지원) 사업기획, 과제운영 및 평가, 긴급 연구활동 지원, 성과전시 등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지원
- (농업연구개발 기획·평가) 스마트농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부문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발굴·기획 및 국내외 R&D동향 분석, 경제성·기술성 분석, 성과분석 등
- (농업연구개발 사업관리) 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 성과활용, 특허동향 및 선행기술 조사, 농업연구 학술활동 지원, 태풍, 가뭄, 국지성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와 외래병해충 등 긴급현안 발생 시 소속연구기관의 피해 복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0조~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등)(법률 제19878호, 2024.7.3.)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3. 27.>

③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그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까지 이를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법률 제19990호, 2024.1.9.),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34854호, 2024.8.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420(추경)	9,043	5,092	6,996	7,07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공동연구사업 수행 연구자 및 소속기관 연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0)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R&D) (1136-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1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및기반육성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특화작목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R&D)	776	776	918	884	108	1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태 조사·분석 및 기술혁신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7.3.)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10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법률 제19878호, 2024.7.3.)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심의·조정)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3. 연구 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35397호, 2025.3.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1호, 2019.1.8.) 전조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34호)

② 추진경위

-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수립 :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 확대' 어젠다 추가 및 중장기 지원체계 수립
- 국가 R&D 혁신방안('18, 과기부) 수립 : 국가 R&D 계획에서 지역중심 R&D 및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별 전략특화작목 특성화 연구개발, 사업화, 연구기반 고도화 지원”의 중요성 명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9.7.9)
- ('19년) 법정사무 수행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 확정
- ('20년) '지역특화작목 기술혁신기반 조성사업' 사업 시행
- ('21년)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마련
- ('24년)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위임하는 사무로 비목변경(기획재정부)
 - * 연구개발출연금 연구개발활동비(360-05) →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320-0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0	776	776	776	8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정책관련 부서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1) 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농진청)(R&D) (1136-32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26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농진청)(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농진청(R&D))	3,581	3,240	2,700	2,700	△540	△1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농생명 바이오산업의 발전 견인과 육성을 위해 소재(축산, 종자)와 연구데이터의 확보, 보존, 활용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 축산클러스터 통합시스템 및 연구소재 안전보존·활용 체계 구축, 종자소재은행 종자실물과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농생명 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공유 및 융합 활용을 위해 신규 범부처 표준에 맞춘 정보 수집·관리·연계 및 가공·활용을 위한 인프라(H/W)·환경(S/W)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8조, 10조, 11조, 14조
 - * 국가의 책무 설정, 투자재원 확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 ※ 제3차 생명연구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바이오산업 혁신 TF 다부처 중점사업으로 추진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위험에 대한 대응
- 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3대 추진전략
 - * 농업생명공학 인프라혁신을 위한 농업유전자원 활용성 촉진
- 「초고성능컴퓨터법」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 「농촌진흥법」 제7조(공동연구사업의 실시)

② 추진경위

<정부 합동 정책 발표>

- ('19.11월~) 바이오산업혁신 TF(기재부) 참여를 통해 범부처 합동으로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 마련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5) (안)」

- ('20.4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바이오특위 사전 검토
- ('20.5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및 경제 중대본 보고

<다부처 사업 기획>

- 범부처 기획협의체* 및 소재·데이터 분과별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 구체화

* 총 3회 개최('20.3.10, '20.04.08, '20.04.21)

** 14개 소재 및 1개 데이터 분야 기획위원회 운영(총 21회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0	4,000	3,600	3,240	2,7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2)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개발(R&D) (1136-33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38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강화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강화 기 술개발(R&D)	3,500	3,500	3,500	3,50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분야 대응강화 기술개발) 농업분야 미세먼지의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대기질 개선 유도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계수 개발 및 영향평가) 농업지역 미세먼지 배출량 모니터링 구축, 경종 및 축산분야 국가고유 암모니아 배출계수 개발·고도화
-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피해경감 및 저감기술 개발) 농작물의 미세먼지 저감량 구명, 시설재배 미세먼지 피해 경감기술 개발, 가축분뇨 암모니아 저감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8.8.) 제7조(종합계획수립) 및 16조(연구개발)
 - 미세먼지 등 배출량 현황,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포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 수립(‘19.1.)

- 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퇴비 부숙도 관리반 구성, 농가 부숙도 지도·점검 강화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관리 강화로 농가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 관리 유도
- 미생물제제의 가축분뇨 살포, 가축 급이 등으로 축산 유래 암모니아 원천저감 추진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완효성비료 사용 확대 등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확대, 축사관리 환경규제 강화 및 축사 현대화

② 추진경위

- 과기부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연구(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의 41개 사회문제에 포함
-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19.4.)
- 과기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안)(‘20~‘24)’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20.5.)
 -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R&D 전략 수립
-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참여(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19.3.~)
 - 농진청 역할 : 농축산분야 미세먼지 생성과정 분석 연구 등 R&D 추진
- ‘농축산 미세먼지 연구협의체’ 운영(‘19.5.~)
 - 미세먼지 관련 업무·연구 정보 교류 및 협업방안 협의
 - 미세먼지 모니터링, 영농부산물 소각 연구현황 공유 및 현안 논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MOU 체결(‘20.5.)
 - 축산 암모니아 배출량 평가 및 2차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 연구
 - 가축분뇨 배출 원단위 산정, 축산분야 저감기술 개발 등 연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공동세미나(‘20.10.)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암모니아 인벤토리 구축 제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750	5,000	3,500	3,500	3,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3) 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 (1136-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44
명칭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및기반육성	현장맞춤형발농업기계고도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현장맞춤형발농업 기계고도화(R&D)	1,700	4,440	12,403	12,403	7,963	17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 고도화) 밭농업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맞춤형 밭농업기계화 기술 고도화
- (현장맞춤형 다목적 밭농업기계 개발) 고효율 농작업을 위한 복합작업형 밭작물 농기계 개발, 밭농업기계의 다품목 이용을 위한 범용화 기술 개발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수행 및 자금 지원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연구 수행 및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밭농업 기계 개발 촉진을 위한 R&D 대책 등을 포함한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①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금 확대
-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관련 상위계획

-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농식품부, '17.3.)
-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과기부, '20.12.)
- 제9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농식품부, '23.2)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농진청, '23.2.)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농식품부, '25.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25.3.)

- 사업 추진경위

- 제48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사전 실무 회의('22.1.4.)
 - * '23년 신규사업 기획 방향 설정을 위한 농식품부·양청, 농기평 등 관계기관 협의
- '23년 신규사업 기획 관련 농진청 업무협약('22.1.25., '22.3.3.~4., 총 2회)
 - * 부·청 협업 사업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등 추진방향 협의
- 정책·현장(연구자, 농업인 등) 연구자대상 기술수요조사 실시('22.3.)
-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고도화' 세부사업 2023년부터 추진
- 부·청 공동 현장맞춤형 발농업기계 기술개발 사업 연구협의체 운영('23~계속, 분기별 1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275	1,700	4,440	12,403

- 기타 : 단일 내역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24)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제기반기술개발(R&D) (1136-3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56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제기반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 제기반기술개발(R&D)	3,999	5,332	4,799	4,799	△533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출전략형신작물보호제기반기술개발) 작물보호제 원제의 수입의존도 완화 및 국내 작물 보호제 원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제의 지속 개발과 우수 제품 실용화 기반 기술 확보
- (신속 평가·예측 기술 개발)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질 소재 안전성 평가 기술 및 스크리닝 기술 확보
- (신작물보호제 후보물질 개발) 작물보호제 원제 후보물질 신규 발굴 및 제품화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 *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농약관리법 제2조의2(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 등을 개발·보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제 및 우수한 품질의 농약등을 개발·보급하고 농약등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추진배경) 국내 작물보호제 산업(농약)은 국가 식량안보의 중요한 전략자산이나, 원제의 수입의존도 증가로 안정적 생산 차질 등 식량안보의 불확실성 배가
 - * 곡물자급률('20, 20.2%)과 작물보호제 원제 수입의존도('19, 97.1%)는 심각한 상황
 - * 외래·돌발병해충 유입 및 확산이 지속 증가하여 공적 방제 비용이 급증, 새로운 작물 보호제 개발이 요구
 - * 작물보호제 원제 수입의존도 완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규 원제 및 우수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에 투자가 시급

- (필요성) 작물보호제 원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서 신물질 발굴, 평가(활성·안전성 등) 및 등록(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기반 기술 개발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4,000	5,332	4,79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5)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핵심기술개발(R&D) (1136-36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 핵심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밀자급률도약생산 소비연계핵심기술 개발(R&D)	-	4,400	5,867	5,867	1,467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개발) 밀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동계 밀 생산 확대와 국산밀 소비촉진 선순환 체인의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밀 2모작 확대 장애요인 극복 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논 이용 밀 2모작 확대를 위해 생육단축 재배기술과 육종소재를 개발하고, 재배안정성,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밀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대규모 생산단위 실증 공동연구를 통한 개발기술 보급을 지원하는 것임
- (국산밀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제고 기반 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국산밀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국내 소비환경 맞춤형 밀 품종 특성을 개량하고, 국산 밀가루 제분 및 용도별 블렌딩 기술체계 구축, 대량 수요처 확대를 위한 가공 산업체와 연계한 가공이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 1. 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34357호, 2024. 3. 26.)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物)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2020. 1. 29.>

1.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2.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3.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4.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5.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6. 첨단기술의 확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 및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교육훈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7. 9.>

1.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2. 도시 등 농촌 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관련 교육훈련
3.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새로운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국제협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기술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국제협력사업 추진
2. 농업기술 분야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밀산업육성법 제7조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법률 제16545호, 2019. 8. 27.)

제7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산업의 발전과 밀가공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밀 품종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밀 재배기술, 시설·장비, 수확 후 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3. 밀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
4.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 관련 식생활 개선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보급·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 종자산업법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등 (법률 제19119호, 2022. 12. 27)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② 추진경위

- 2025년 밀 자급률 도약 생산-소비 연계 핵심 기술개발 사업을 ‘밀 2모작 확대 장애 요인 극복 기술 개발’ 및 ‘국산밀 소비 촉진을 위한 품질제고 기반 기술 개발’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여 신규 추진

- (정책시행)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밀산업육성 기본계획(’21~’25)** 수립되어 밀 자급률을 ’25년까지 5%(’30, 10%) 달성을 목표로 14개 핵심과제 추진

* ①생산기반 확충과 품질 고급화, ②국산밀 유통·비축 체계화, ③대량·안정적 소비시장 확대, ④현장문제 해결형 R&D 전환, ⑤국산밀 산업계 역량강화

◆ 밀 자급률 정책 목표

· 밀산업육성기본계획(’20) 및 국가식량계획(’21) : (’22) 1.3% → (’25) 5 → (’30) 10

- (중장기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 점탄성 개선, 고단백질 등 용도별 밀품종 고급화 및 보급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9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4,400	5,8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6)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1136-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4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 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작물수급안정을 위한이상기상대응 기술고도화(R&D)	-	6,000	8,000	8,000	2,000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이상기상 대응기술 고도화) 원예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기반 이상기상 피해경감기술 개발로 원예작물 안정 생산·공급 체계 구축
-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개발) 이상기상 대응 품목별 재배특성 맞춤형 종합기술 개발 및 투입·실증을 통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 확립
-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공급 체계 구축) 대표적 김장채소의 추석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한 여름배추의 생산, 예측, 비축 기반 기술 개발로 안정공급 체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농촌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개정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제36조 (기술·연구의 진흥/기술개발 추진)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농림업관측)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 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5. 3. 27.>

[전문개정 2011. 7. 21.][제목개정 2015. 3. 2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45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정부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기자재·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의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24.4.)

- 이상기상·병해충 피해 증가, 재배적지 변동 등 기후변화 준비 미흡

* 재해예방시설 대폭 확충 및 피해 위험지역 집중 보급 : ('23) 냉해 1.1% → ('30목표) 30%

* 농가 맞춤형 조기경보서비스 확대 : (현재) 과수화상병 → (추가) 개화기 냉해·탄저병

○ 원예농산물 관측사업, 수매비축, 채소가격안정제 등('23.7.)

* 생산량 예측을 고도화하고 예측값을 생산자·지자체에 제공하여 자율 수급관리 지원

* 배추 저장방식 개선 및 산업체(김치공장) 자체 비축 활성화 지원

* 배추·무·마늘·양파·대파 등 노지채소 대상 가격차보전 및 면적조절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9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6,000	8,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7)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1136-36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기초기반전문 기술인재양성(R&D)	-	2,400	3,200	3,200	800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양성)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 기초·기반 분야(토양, 식물영양, 병원균, 해충·잡초 생태 등 4개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 양성
 - * 토양, 식물영양, 병원균생태, 해충·잡초생태 4개 분야(단기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사적인 이익 창출 곤란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
- 학생의 R&D 참여와 전문교육을 통해서 농업 기초·기반 분야*의 연구역량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기술인재로 성장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 농촌진흥법

- 「농촌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새정부 공약사항) 국가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공약 2. 성장 - 2. 성장기반구축>

-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인재 육성으로 R&D 연구 및 산업현장의 인적 수요·공급 균형 확보

○ (국가정책)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 과기부), 제4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과기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5., 과기부)

- (인력 양성) 연구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전문인재를 중점 육성하고 석·박사급 이공계전문기술인력 활용 강화

* 우수 기초과학 연구자 지원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해외 기술·인력 교류와 해외 우수 인재 확보·활용 제고

- (혁신생태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규제과학 연구, 인프라 등 지원 강화 및 농수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공공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② 추진경위

<추진배경>

- (현황) 최근 기후변화·이상기상 등으로 작물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식량안보에 위협이 가중되어 농업생태계의 변동성·불확실성이 증가 추세
- (문제점) 지속가능한 농업과 작물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 기초·기반분야 전문 기술인력이 필요하나,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감소하고 양성 기반이 약화
 - * 타분야 대비 농업과학 전공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신성장·응용분야에 집중된 예산·연구개발로 인해 농업분야의 전문인력 유입력 낮음
 - * 특히 토양, 병해충, 영양·생리 등 농업기초·기반분야는 논문, 특허 등 단기성과 산출 효율이 낮아 사적이익 창출이 어려워 대학교원·학생 등 인력 유입력 취약
- (필요성) 식량생산 기반 유지 등 공공R&D와 전문 기술인력 유지를 위해 R&D 활동을 통한 대학의 기초·기반 전문인재 양성 기반 구축이 시급

<추진경과>

- 농촌진흥청에서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 사업('08~'16)'을 통해 농학·이공계 졸업생의 연구활동 및 전문역량 배양의 기회 제공

※ 이공계대 인턴십 운영사업 성과

- (인재양성) 농학·이공계열 대학(원) 총 4,400여명 참여
- (기술성과) KCI논문 1,247건 도출
- (경제성과) 총 2,883개, 연평균 320개 일자리 창출
- (사회성과) 수혜자의 취업률 6.04% 증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9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400	3,2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기초기반 전문기술 인재양성	출연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전문기관)	3,200	10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업 명
(28)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최적기술개발및고도화(R&D) (1136-38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8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최적 기술개발및고도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가축생산비절감정밀 사양최적기술개발및 고도화(R&D)	-	-	3,000	3,000	3,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축 생산비 절감 정밀영양 최적기술 개발 및 고도화) 최소 영양소 요구량에 근거한 가축 정밀영양관리 기술개발 고도화를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 제14조(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제1-2항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영양분석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와 사료영양정보총람, 축종별 사양표준 등으로 각각 작성·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23~'32)
 -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이용효율 향상 및 양질의 조사료 보급·이용 확대

② 추진경위

- 축산분야 탄소저감 및 축분 에너지화 관련 업무분담 협의('24~'25, 농식품부)
 - (농진청) 최소영양소 요구량 기반 정밀영양, 사료소재 개발 등 기초기반 연구 추진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한국가축사양표준 개정 추진
 - (농식품부) 축산자재 개발, 축사 자동화시스템, 축산유통 효율화 등 산업화 연구 추진

- (새정부공약) [행복-1-24] 사람-동물 행복한 사회, [성장-5-6] 지속가능한 축산발전
 - [행복-1-24]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를 통한 농장동물 복지 개선
 - [성장-5-6] 동물복지 활성화, 정밀사양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29)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1136-38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83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 플랫폼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AI기반작물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개발 (R&D)	-	-	7,800	7,800	7,8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 빅데이터·AI 기반의 작물 생육(식량작물·과수·시설원예) 자동 모니터링, 정밀 진단 및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작목의 생육 전과정을 지능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영농관리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 지원
- (노지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AI기반 노지 작물(식량작물·과수) 생육 진단·예측 모델 및 지능형 의사결정(작물관리, 농작업, 환경제어 등) 모델 개발
- (시설원예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AI기반 시설원예 작물 생육 진단·예측 모델 및 지능형 의사결정(작물관리, 농작업, 환경제어 등) 모델 개발
- (표준기반 농업용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 및 활용) 작물별 데이터, AI모델, 지능형 영농관리솔루션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방형 농업용 AI 플랫폼 개발 및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9조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 기능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서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구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④ AI 활용 확대를 통한 전 산업·지역 확산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관련 상위계획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관계부처 합동, '22.9.)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농식품부, '22.10.)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과기정통부, '23.1)
-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 (과기정통부, '23.9)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4.03.26)
- 「국가 AI 전략」 (관계부처 합동, '24.9)

- 사업 추진경위

-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을 통한 농업 현장(시설, 노지) 빅데이터 수집체계 구축('19.1~'23.12)
-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세부사업의 「노지 농업 예측·진단 핵심기술개발」 내역사업으로 기획 추진 → 과기부 대상 미선정('23.9~'24.5)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25.1.23) 대응 그린바이오, AI 분야 R&D 중점투자 방향 설정('24.11)

- 농진청 민관 파트너십 기반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의 농업AI 분야 세부 추진계획 수립('24.12)
 - * (미래로) 위성·AI·로봇 기술 적용 확대로 정밀농업 혁신 프로젝트 내용 포함
- 농업AI·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환류 촉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25.2)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분야 신규 국가R&D사업 사전점검 진행('25.3~5)
 - * 검토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인공지능·ICT전문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디지털전환 국가기술전략센터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800

- 기타: 3개 내역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0)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1136-38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84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 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AI기반생체·정서 반응형농업활동서비스 플랫폼개발(R&D)	-	-	3,000	3,000	3,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AI 기반 생체·정서 반응형 농업활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 농업 활동의 고부가가치화 및 헬스케어 융합 기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AI·AX 기반 생체신호 분석과 디지털 헬스 융합 기술을 활용한 치유농업 플랫폼 및 실시간 건강효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임
- (농업활동 치유효과의 AI 다차원 분석) 동 내역사업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 신체특성을 고려한 농작업별 생체반응 유형, 생리·정서 효과의 AI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농작업 처방 알고리즘 개발하여, 이를 전국 치유농업확산센터에 구축하여 치유농업법의 실효적 정책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AI 기반 인간 - 반려식물 상호작용 및 심리 케어 시스템 개발) 동 내역사업은 고립·은둔,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해 인간-반려식물 교감 시그널 측정 분석기술 개발 등 반려식물을 활용한 인간-식물 상호작용 심리 케어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법령) 공공·의료·농업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AI·AX 기반 농업 - 헬스케어 융합사업은 다음의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차 치유농업 종합계획('22~'26)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3~'27)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차 삶의질 기본계획('25~'29)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24.3.29. 시행):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중앙지원기관(농진청) 지정 근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6~'30, 수립 중)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국민 건강권, 예방적 건강관리, 고령자·정신건강 포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2조: 지역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비약물적 중재수단 확대

- 「정보통신융합법」(‘25.4.23. 시행) 제5조: AI+헬스 융합기술 실증 및 조기 상용화 촉진 (과기정통부)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24.10 발의) 제2조, 제5조, 제9조 : 헬스케어 분야의 AI·빅데이터·IoT 기술 활성화 및 제도화 근거 마련 중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② 추진경위

- (정책) 농식품부, 농진청, 보건복지부, 대통령직속 소관 관련 정책
 - (농식품부) 제3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 계획(‘23~’27), 제5차 삶의질 기본계획(‘25~’29), 농촌공간계획 활성화방안(‘25.2.9), 제1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24~’33)
 - (농진청) 제1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2~’26),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6~’30, 수립중)
 - (보건복지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전략」(‘24) : AI 기반 정밀·예측 의료 실현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
 - (대통령직속) ‘AI 국가위원회’ 국가 AI전략 기본 구상(‘23) : 공공AI 활용 촉진 방안
- (공약)
 - (성장-1-1) ①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성장-1-11) ①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 (행복-5-11) ② 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 가구 등 주요 집단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 (행복-6-8) 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
 - (행복-6-9) ① 정서 행동 문제, 경계선 지능 등 고위험 청소년 정책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정서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취약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1)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R&D) (114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0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R&D)	5,267	7,005	7,049	7,049	44	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 신육종기술개발 기반 구축과 육종소재의 개발을 통해 육종기술 경쟁력 향상 및 농생명산업 성장 기반 구축
- (신육종기반기술개발) 유전자교정 기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신육종기술 개발을 통해 작물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신육종기술육종소재개발) 유전자교정 기술 기반으로 주요 형질전환 작물 소재를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 및 가치증진 육종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령)** 과학기술기본법(11조), 생명공학육성법(13조), 종자산업법(7조),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6조), 농촌진흥법(7조), 그린바이오산업법(11조) 등 국내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육종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부합
- **(상위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등
 -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과제에 따라 농생명소재 산업화 및 차세대 첨단 육종기술 개발 추진
 - ‘제2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의 최신�육종기술 활용 기능성 고품질 품종 육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3대 추진과제 제시(‘17, 농식품부)
 - *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위한 최신�육종기술 활용 품종 연구개발
- **(투자방향)**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 과기부)
 -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지원 강화
 - *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소재 산업화 지원 강화
- **(기본계획)**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32)
 - 전략2 그린바이오 원천기술 확보 및 농식품산업 활력 제고
 - * 2-1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농생명공학 활용 원천기술 개발

② 추진경위

- 부·청 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동 사업 공동기획 협의(‘17.8월)
- 정부 R&D 사업 기술성평가/예타조사 대상사업 신청(‘17.10, 과기부·기재부)

- * 농진청/농식품부 공동 예산 총액 1,159억(국고 869억원, 민자 290억원)
-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기술성평가 대응 및 “적합” 선정(‘17.11, 과기부)
- * 사업내역 : 2개 부처 3개 세부사업(1,159억원/7년, 농식품부 238억원)
-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18.12, KISTEP/기재부)
- * B/C 0.77, AHP 0.67681(‘18.10, KISTEP) 으로 타당성 인정
- * 내역사업 조정에 따른 예산 : 1,159억원 → 760억원(농진청 단독추진 권고)
- * 사업기간 : 2020-2026 (7년)
- 차세대 농작물 신육종 기술개발 사업 추진 계획(안) 수립(‘19.1월)
- * 신육종기술실용화사업단 운영 기본계획 보고(‘19.1, 청장) 및 사업설명회 개최
- * 사업단장 선정(‘19.4) 및 사업지원팀 구성
- 동사업 1단계 계획수립, 기술수요 조사 및 분석(‘19)
- 동사업 1단계 과제선정 평가 및 협약(‘20.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760억원
- 사업기간 : ‘20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22	9,035	5,331	7,005	7,0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2) K-농식품자원기능성성분활용기반고도화(R&D) (1147-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03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K-농식품자원 기능성성분 활용기반 고도화(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K-농식품자원 기능성성분 활용기반 고도화(R&D)	6,431	6,431	6,054	6,054	△377	△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K-농식품자원 기능성성분 활용기반 고도화) 다양한 목적별 농식품의 성분데이터 구축과 기능적(인체건강)으로 우수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국산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고도화) 맞춤형 건강관리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농식품자원의 영양·기능성분 및 식품속성(색, 맛, 질감 등) 데이터 개발·확충, 국가 표준식품성분 제11개정판 작성 등 수행
-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제 지원 농산물 유효성분 데이터 구축) 국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유효(지표)성분 구명, 원재료 표준화와 관련된 정보 개발, 효능-성분-대사체 예측 알고리즘 개발 등 수행
- (발효미생물 멀티오믹스 정보 및 실용화 데이터 개발)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발효미생물의 멀티오믹스 성분 분석 및 정보 개발, 대사체 DB 구축, 발효완성 품질지표 설정, 종균 보급 플랫폼 구축 등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바이오산업 혁신 대책(III)」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혁신성장전략 회의, '20.9.21)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특수목적식품 정보조사 및 DB 확대
-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 산지 농산물 및 전통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제19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7조 건전한 식습관 형성, 제12조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제21조 식생활 조사·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20.12.29.)

* 건강기능식품 외의 일반 식품(이하 '기능성표시식품'이라 한다)에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표시 가능

② 추진경위

-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20.9.21), 그린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의 일환으로 식품분야 빅데이터 구축 추진

* 식품 빅데이터는 영양·기능성분, 식품속성, 메타오믹스, 식단·레시피 등과 연계 체계적 확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00	7,200	6,431	6,431	6,0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3) 원예특용자원생산과품질표준화연구(R&D) (1147-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04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R&D)	3,049	3,050	3,050	3,05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특용자원 생산과 품질표준화 연구) 기능성식품, 의료용 등 다양한 활용도를 개발하기 위한 특용자원의 효능성분 안정생산 및 표준화 기술개발
- (의료용 특용 자원의 성분 안정화, 표준생산 기술 개발) 고부가 식의약 원료 개발을 위한 의료용 대마 등 유망 특용자원의 성분 안정화 및 표준생산 기술개발
- (면역강화, 정신건강 증진 원예특용자원의 효능향상 및 원료 표준화 연구) 이용 다양화를 위한 특용자원의 효능성분 안정생산과 표준화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유엔마약위원회 대마 규제개선 권고안 승인('20.12.02)
 - 대마 수지 중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음
 - 대마와 대마 수지를 1961년 제정된 유엔 마약류에 관한 단일협약의 4등급 마약물질에서 제외
-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3.12.)
 - 희귀·난치성 환자의 권익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 의료용 대마 사용 질환 : 30여 질병(뇌전증,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등)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 제3조 및 「한의약 육성법」 제6조 (부처별 종합계획의 수립)
 -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토종 약용자원의 고부가화 정책추진
 - '약용작물 유래 글로벌 기준의 바이오원료 생산기술 개발 연구' 와 '한약재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원료 생산기술 개발 연구' 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 명시
- 감염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여야 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추진경위

- 높은 잠재가치를 갖는 특용자원의 고부가가치 소재 활용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식물 자원 소재의 국산화 추진
 - (의료) 의료용 대마는 세계적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산업 규모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시작단계인 연구분야의 발빠른 투자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조기 해소 필요
 - (건기식) 코로나블루와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시장이 확대되면서 바이오업체의 국산 식·의약 원료사용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00	8,998	3,050	3,050	3,0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4) 반려동물전주기고도화기술개발(R&D) (1147-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07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 신성장 동력 연구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R&D)	4,010	4,010	3,409	3,409	△ 601	△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반려동물 전주기 고도화 기술개발)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영양생리 기반의 사료화 및 건강·질병예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사료원료 및 영양성분 조성에 따른 반려동물 기초 영양생리 평가 연구, 국내산 축산물을 활용한 고품질·기능성 펫푸드 개발
- (반려동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술개발) 반려동물 임상학적·유전학적 신체나이 기준 마련 연구, 줄기세포 유래인자의 항염증 작용기전 규명 및 활용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시행일: 2025. 4. 23.]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구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 제11조 (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인은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 관련 시험 실시 및 연구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주요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양(면양·염소) 등 반추동물
2.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이 되는 닭·오리·평·거위·매추리·칠면조·타조 등 가금류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동물등에게 제5항의 물질을 사료 및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의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18~’27) 수립(‘17.12.)

- 반려동물 산업기반 구축 연구 : 사료, 질병관리, 유전체, 유전자원 보존 등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4) 수립(‘19.12.)

○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19.12.)

-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품질인증체계 구축, 제품개발을 위한 사양정보DB 구축 등

- 동물복지 종합계획('20~'24) 수립('20.1.)
 - 바이오인식 등록방법 개발, 반려동물 생산업 표준사육시설 개발 등
- 바이오산업 혁신대책-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20.9)
 - 반려동물용 사료첨가제 개발, 동물 줄기세포 연구개발, 곤충 사료화 등

② 추진경위

- 농식품부-농진청 간 '22년도 R&D 신규사업 협의('21.2.9)
 - 농진청 기존사업 이어달리기 및 후속사업 공동추진 합의
- 반려동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농진청-축산원-반려동물사업단 간 업무협의('21.2.17)
 - 신규사업 내 내역사업 및 핵심 키워드 발굴 협의
- 농진청 '반려동물 전주기 기반기술 개발' 사업기획 TF 구성('21.3.25)
 - 영양·사료, 임상의료, 유전체,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원 보존 등 핵심분야 선정
- 전공분야별 내역사업 및 주요 세부연구 방향설정 및 사업화 기획('21.4.12)
- 반려동물 먹거리 분야 협업영역 발굴을 위한 부·청 협의('21.4.15.)
 - 22년 농식품부-농진청 간 공동 신규사업으로 추진 합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3,350	4,010	4,010	3,4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5)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1147-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30
명칭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 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스마트팜다부처 패키지혁신기술개발 (R&D)	16,643	18,180	18,708	18,708	528	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국내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저투입·고효율 중심의 스마트팜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 농업 지속가능성 및 스마트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세대 스마트팜 현장 적용성 검증·실증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 정출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연구) 스마트팜의 원천기술 개발 및 확산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위한 기술개발로 대학, 정출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
- (사업단 운영비)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의 원활한 운영 및 연구과제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사업단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 ④ AI 활용 확대를 통한 전 산업·지역 확산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관련 상위계획

- 스마트농수산업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과기부, '22.1)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농진청, '23.2.)
- 제4차 융합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과기부, '23.12.)
-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농식품부, '24.4.)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25.3.)

- 사업 추진경위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팜 선정('17.7)
- 다부처 사업 추진 최초 권고(과기정통부→농식품부, '18.1)
- 다부처 공동기획 착수('18.2)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2회 및 예타대상 미선정 2회('18년 제2차-5월, 제3차-8월)
- 다부처 공동 보완기획 완료('19.1.)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19년 제1차-2월), 대상선정('19.3.), 예타통과('19.10.)
- 다부처 사업 1단계('21~'24년) 종료 후 2단계('25~'27년) 추진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29,653백만원
- 사업기간 : '21년~'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84	21,260	16,643	18,180	18,708

- 기타 : 3개 내역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100%(대기업 5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25% 이상 매칭)
- 사업시행주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재)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
- 사업 수혜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소, 기업, 농업회사법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연구	출연	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재)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8,879	10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 농촌진흥법 제7조
차세대 융합·원천 기술연구	출연	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재)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8,929	10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 농촌진흥법 제7조
사업단 운영비	출연	농림식품 기술기획 평가원 (재)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단	1,000	100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사 업 명
(36)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1147-34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4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 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 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 개발(R&D)	-	-	1,770	1,770	1,77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 기후위기 대응 광역적·과학적 농작물 작황 및 농업재해 대응 분석, 농업환경자원 상시 관측 등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수급 조절,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분야 위성정보 산출물 생산 및 공공 서비스 제고
- (위성기반농업관측기술개발) 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 모니터링, 농경지 변화 감시, 재해 대응, 해외 작황 분석을 포함한 핵심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 및 제5조의3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26.>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자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 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6조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양곡관리법 제16조의2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국 재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국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국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국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농림업관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농림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림업관측 또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① 식량안보에 기초한 농업투자 및 식량자금 확대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69)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②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관련 상위계획

- 제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관계부처합동, '26~'30)

-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방안(농식품부, '24.12)

* 위성 데이터 활용 농업관측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 '24~'28)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25~'29)

-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식품부, '23.4.)

-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농촌진흥청, '18~'27)

* (1.5.3) 차세대 농림업 위성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22.12.)

- 농업위성정보활용센터 구축 및 운영 계획(농촌진흥청, '22.8.)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관계부처합동, '21~'25)

-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사업 기본계획(국가우주위원회, '19.4.)

- 미래농업을 위한 과학기술 전략(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9.4.)

* 차중4호(농림위성) 영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활용체계 구축계획 보고

-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 방안(농식품부, '24.12)

* 위성 데이터 활용 농업관측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 사업 추진경위

- 농림위성 활용성 증진을 위한 기반 연구개발 추진('95~현재)

- 차중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및 통과('17.2.~'18.6)
 - * 최종 2기(농림, 수자원)만 통과, 시급성 및 필요성 인정 (B/C 0.83, AHP 0.639)
- 차중 2단계 사업 내 4호 농림위성 개발 착수('19.12.~)
- 농업부분 농림위성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획
 - 1단계('14~'15) : 위성영상 활용성 분석 및 기본전략 수립
 - * 농업분야 활용가능 분야 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전문가 의견수렴 병행)
 - * 위성활용 농경지 관측 시나리오 및 소요 기술 분석 등
 - 2단계('16~'17) : 위성활용정보센터 설립 타당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농업부분 센터 설립 및 운영방향 수립
 - * 농업부분 위성활용의 경제성 제시, 관련 법제도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3단계('19) : 위성활용정보센터 활용전략 및 기획설계
 - * 농업부분 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 * 센터 입지타당성, 시설 및 장비구성 기본설계 및 구축방안
 - * 소요예산 및 인력산출 및 추진일정 제시
- 농업위성활용 기반구축사업 추진('21~'25)
- 농업위성센터 신규조직 신설('24.5.)
- 농업부분 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수립 및 사업기획(2단계)
 - * 중장기 발전계획, 농업위성정보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24)
- 농업위성센터 발전 로드맵(2025~2030) 수립('25.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77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7)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R&D) (1147-34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43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능형농업로봇핵심 기반기술개발(R&D)	-	-	2,950	2,950	2,95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능형 농업 로봇 핵심 기반기술 개발) 농작업환경 특성 및 효율적 농작업 수행을 위한 농업로봇 핵심기반 기술 및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 개발
- (AI기반 농업용 로봇 지능형 농작업 요소기술 개발) 농업환경(논, 밭, 과수 등) 특성에 따른 농업용 로봇을 위한 센서융합 기술, 로봇 플랫폼, 시각 지능화 기술 및 농작업자 행동특성 모방 학습형 제어 요소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제9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 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정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제7조의2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 (실천과제) ④ AI 활용 확대를 통한 전 산업·지역 확산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 (실천과제)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관련 주요공약
 - [성장-1-01] ②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기술 및 기반 확보
 - * 산업 및 서비스 분야 Physical AI(사람을 닮은 로봇) 산업 육성
 - [성장-1-16] ⑥ 디지털 전환(DX)·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 추진
 - * 빅데이터·AI(인공지능)·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생산성 향상
 - [성장-4-18] ⑤ 스마트팜, 농기계(자율주행, AI),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연관산업 등 육성 및 수출 확대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3.06)
 -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4.01)
 - 「제9차 농업기계화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4.01)
 -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4.02)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24.03)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기본계획」 (국가기술자문위원회, '24.08)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농식품부, '25.0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25.04)
- 추진경과
 - ('22. 6.) '노지농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23. 3.) '노지농업디지털전환기술개발'사업 예타 최종 미시행
 - ('24. 1.) '지능형 농작업' 분야 '25년도 신규사업 부·청 협업 기획 착수
 - ('24. 5.) 부·청 '지능형 농작업' 분야 사업 최종 미반영(과기부)
 - ('24. 7.) 부·청 '농식품 연구개발 공동기획단' 출범
 - *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전략을 강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
 - ('25. 1.) 공동기획단을 중심으로 '지능형 농작업' 분야 '26년도 신규사업 부·청 공동 기획 착수
 - * 부는 정책 수요에 따라 로봇·드론 2개 내역, 청은 로봇 기반 기술 1개 내역 구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95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8)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R&D) (1147-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44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대체단백특화시장 맞춤형원료화(R&D)	-	-	7,800	7,800	7,8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체 단백질 특화시장 맞춤형 원료화) 국산 생물자원 기반(식물, 곤충 등) 대체 단백질 소재의 차별화된 고부가 원료화 및 특화시장 창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 (국산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 소재화) 동 내역사업은 고품질 국산 원료 식물성 단백질의 고부가화와 산업적 적용 확대를 위해 대체식품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산 자원 발굴, 원료 특성 공공데이터 서비스 제공, 원료 생산시스템 개발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기술을 지원하는 것임
- (곤충 단백질 특수의료용도식품 소재화) 동 내역사업은 우수한 대체 단백질 소재인 곤충자원을 활용한 특수의료용도식품용 특화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체를 대상으로 곤충 단백질 기능성 규명, 균일하고 표준화된 고품질 원료 생산시스템, 곤충 이취 저감 기술 개발로 특화시장 맞춤형 소재화 기술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12.21. 시행)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2. 푸드테크 연구개발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5.1.3.)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23.6.28.)

-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② 추진경위

- ICT·로봇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푸드테크 분야 과제에 대한 범부처 R&D 사업 예타 추진(’22.12월,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 * (분야) ①식물기반식품 제조, 식품 ②커스터마이징·③3D 프린팅·④스마트제조 기술
 - * (참여) 농식품부, 농진청, 과기부, 산업부
- 푸드테크 R&D 예타 미시행 확정(’24.11.) 후, 부처별 단기사업 편성 추진
 - * (농진청) 대체 단백질 소재 특성 정보 DB 구축, 소재 국산화·다양화
 - * (농식품부) 커스텀푸드 실증형 스마트 생산기술(신규내역)
- (공약) [성장-4-18]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로 농업을 미래 농산업으로 전환
 - *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메디푸드, 푸드테크 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육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8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39)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1147-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4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 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특용작물유래천연 활성바이오소재생산 및활용기술개발(R&D)	-	-	7,500	7,500	7,5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 농생명자원의 신가치 창출과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밀농업 및 세포배양·합성생물학 등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물질 최적생산기술을 개발
- (천연활성 바이오소재 생산 최적화 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원예특작자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바이오데이터 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을 통한 바이오소재 산업화 기반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지역특화작목 및 신품종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특용작물 바이오소재의 유용성분 증진 및 생산기술을 개발, 원예특작 바이오 데이터 생산 및 표준화를 위한 사업임
- (식물세포 기반 고부가 기능성 소재 대량생산 원천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식물세포주 기반의 기능성 소재 대량 생산 플랫폼 개발 및 대사회로 정보 활용 소재 생산 최적화하는 것으로서, 고부가 기능성 소재 생산 최적화 식물세포와 대사경로 지식 기반의 목표소재 생산 최대화 기술 및 합성생물학 활용 목표소재 생산 극대화 식물세포주를 개발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과학기술기본법(11조), 생명공학육성법(11조), 농촌진흥법(7조)
-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육성법(6조)
- 그린바이오산업법
- (상위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제7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 제4차 농업생명공학 중장기기본계획

② 추진경위

-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12대 전략·중점기술로 첨단바이오, 합성생물학 선정('22.10)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안)('23.2, 농식품부)

- * (그린바이오산업화 촉진) 농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 창출
-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약

- * 성장-1-16 : 글로벌 4대 첨단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첨단산업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
- * 성장-4-18 :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K-푸드수출확대, R&D 강화로 농업을 미래농산업으로 전환
- * 회복-2-3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
- * 성장-1-1 : 인공지능 대전환(AI)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0)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1147-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347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작업안전관리기술 및웨어러블편이장비 개발(R&D)	-	-	3,000	3,000	3,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및 웨어러블 편이장비 개발 사업)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인의 재해예방 및 건강권 보장을 통해 국내 노동 노동력의 보존과 지속 가능성 향상
-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 장비 개발 및 실용화) 첨단 스마트 기술 활용 보조 웨어러블 장비, 안전·편이 장비 개발 등 농업인 맞춤형 건강·안전관리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 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치료 및 보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

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12.>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7. 23.]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실천과제) ②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실천과제)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관련 주요공약

- [성장-4-20] ④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 농업인 출산·육아 도우미 지원 강화,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

- [행복-1-14] ②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및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

* (재해보험) 할증 최소화 및 국가지원 확대, 보상범위와 보상률 강화

- [행복-4-6] 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를 구축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제2차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농식품부, '25~'29)

- 제5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5~'29)

-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행안부, '25~'29)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25~'29)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농식품부, '21~'25)

- 제8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농촌진흥청, '23~'32)

○ 추진경과

- '20. 10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전략 수립
- '20. 12 농업인 안전재해예방 사업전략 수립 및 조직 고도화 방안 수립
- '20. 12 시설작업 농업인 재해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 '22. 12 농업기계 안전 연구동향 조사 및 발전 전략 수립
- '24. 4~1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협의체 및 발전방안 연구 협의(6회)
- '24. 10 농작업 안전재해 연구현황 및 강화 요청(국정감사, 임미애 의원 등 6건)
- '25.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제2차 기본계획 및 '25 시행계획 협의·수립
- '25. 1 농작업 사고 발생 신속감지·119 연계방안, 119 구조자료 분석 협력(소방청)
- '25. 2 청·지자체·민간 협력 웨어러블 로봇 농업적용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 '25. 5 농작업재해 예방협의 및 안전보험 기반 재해통계 생산 협력(농식품부, NH농협)
- '25. 6 농업경영체DB-국민건강보험공단DB 가명정보 결합기반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빅데이터 분석 협의·추진(농식품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25. 6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사후관리·발전방안 연구지원 요청·협의(농식품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 ~ '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3,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1)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1147-42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424
명칭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 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노지스마트농업활용 모델개발(R&D)	-	3,750	5,000	5,000	1,250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지 스마트농업 활용모델 개발) 농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모델 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 지원
- (노지 스마트영농 통합솔루션 개발) 노지 주요 작물(13품목)에 대한 농작업 연계 생산 전 과정의 통합 솔루션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의2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농업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농촌진흥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기관 등에 출연할 수 있다.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실천과제)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관련 주요공약

- [성장-4-18] ①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노지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및 펀드 확대

- [행복-2-7] ② 기후적응형 농업 추진

* 품종개발, AI 관측 재해예측 고도화, 노지스마트농업 체계 구축, 정밀농업 확산, 스마트 관배수 시스템 도입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스마트농수산업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효율화 전략」 수립(과기부, '20.12.)

- 「디지털 농업 촉진 기본계획」(농진청, '21.1.)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22.9.)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농식품부, '22.10.)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2.10.)

○ 추진경위

- '22.1.~3. 「농수산분야 융복합 연구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1.4~8.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 다부처 사업 공동기획

- '21.6.~7. 전문가·농업인 대상 설문 및 기술수요조사

- * (전문가) 노지농업의 문제점, 이슈 발굴, 기술수요 도출, (농업인) 현재 수준, 디지털 전환 이슈 발굴 등
- '21.9.~10. '21년 제3차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 → 대상 미선정 발표
- '21.11.~12. 농가의 디지털 전환 수요조사
- '22.7. '22년 제2차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 대상 선정 발표
- '23.2. 예타 최종 미시행
- * '23.2. '노지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예타 최종 미시행('23.2.)에 따라 단기사업으로 개편
 - ☞ 기술개발 지연 시 해외기술 종속 우려
- 농식품부·농진청 역할분담 및 협업 영역 편성방안 논의('23.2.)
- '24년 신규사업 기획 관련 농진청 업무협약(총 4회)
 - * 부청 협업 사업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등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방향 협의(3.20, 4.6, 4.12, 4.18)
- '25년 신규사업 기획 관련 농진청 업무협약(총 3회)
 - * 부청 협업 사업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 등 신규사업 기획 및 추진방향 협의(2.27, 3.20, 4.1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8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750	5,000

- 기타 : 단일 내역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2)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1147-42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429
명칭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 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 기술기반구축(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구축(R&D)	-	4,000	5,333	5,333	1,333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혁신기술기반 구축) 작물·가축 미생물 생태계를 고려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통합정보 생산·서비스 및 식물자원 연계 실용 소재화
-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및 자원 제공 서비스 구축) 동 내역사업은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효율 제고를 위해 연구자 및 산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 및 자원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임
- (작물·가축 생산성 향상 마이크로바이옴 조절 기술 개발) 동 내역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소재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멀티오믹스·메타지놈 기반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다양한 기능의 범용적·균일한 효과를 발현하는 미생물 소재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위계획)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 *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 마이크로바이옴 선정
- (정책)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20.9., 관계부처 합동)
 - * 5대 산업기반(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 (정책)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21.12., 과기부)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혁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연구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공통기반 기술과 동시에 인간, 동·식물, 산림, 환경 등 분야별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
-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촉진) 중장기·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제공 및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
- (마이크로바이옴 발전 생태계 조성)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

- (정책) 국가 전략기술 운영방안('22.10., 과기부)
- 12대 국가전략기술사업*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포함
 - *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④차세대원자력, ⑤첨단바이오, ⑥수소,

- ⑦우주·항공·해양,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통신, ⑪ 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정책)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23.2., 농식품부)

(혁신기술 개발 및 융합형 인력 양성) 12대 핵심기술* 분야 R&D 확대 및 기업 참여 유도
 *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디지털육종, 바이오 농약·비료·사료, 동물 의약품 등

② 추진경위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25) 수립('17.9., 관계부처 협동)
 - *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 마이크로바이옴 선정
-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20.9., 관계부처 합동)
 - * 5대 산업기반(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생태계 조성 목표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전략('21.12., 과기부)
 - *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혁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연구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공통기반 기술과 동시에 인간, 동·식물, 산림, 환경 등 분야별 혁신 가속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
 - *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촉진) 중장기·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제공 및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
 - * (마이크로바이옴 발전 생태계 조성)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부처별로 운영중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
- 국가 전략기술 운영방안('22.10., 과기부)
 - *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포함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23.2., 농식품부)
- 마이크로바이옴 R&D는 예타 미시행('22.6.) 확정 후,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예타 사업으로, 타 분야는 부처별 단기사업 형태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8년(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4,000	5,3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3)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R&D) (1147-4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7	432
명칭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 개발	농업신성장동력연구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 (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산부산물Eco순환 기술개발(R&D)	-	5,000	6,667	6,667	1,667	3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산부산물 Eco-순환 기술 개발) 폐기되는 농산부산물의 발생량 저감과 재활용 기업의 고부가 소재화(업사이클링)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실용화 기술 기반 구축
- (농산부산물 원료화 기반 구축) 동 내역사업은 농산부산물 원료의 기반 구축을 위해 연구자·산업체를 대상으로 주산지 중심의 농산부산물 원료 공급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원료-품질-안전-소재) 공공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임
- (농산부산물 소재화 기반 구축) 동 내역사업은 농산부산물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자·산업체를 대상으로 과실·버섯 부산물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다용도 소재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4.1.), 「자원순환기본법」(‘20.5.)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 순환경제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인력·금융·국제 공동 연구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 가능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 국가의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 사업추진 가능

- (정책) 농산부산물 활용 관련 R&D 계획과 다부처 합동 정책 수립

- (제4차농업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부산물 활용 기술 개발
- (식품산업R&D중장기계획) 농산부산물 및 가공식품 공장 부산물 이용 소재 개발
- (탄소중립 추진전략) 순환경제 활성화
-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기술 중 업사이클링 기술 포함

② 추진경위

-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지원을 위한 부처 역할분담 및 협력 논의
 - (농진청) 부산물 원료화(원료 공급 공급시스템, 부산물 DB화, 식품원료 등록, 규제개선) 및 실용화(산업소재화-식의약, 향장, 산업용)에 대한 기반 연구로 산업 원천기술 개발
 - (농식품부) 부산물 원료화(원료 전처리·거점시스템 구축-지자체 협조) 및 실용화(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산업체·지자체 지원 사업 추진

- (부청협력) 부산물 업사이클링 관련 법규·제도 검토 및 문제점 논의
- 농식품부산물의 현황 및 업사이클링 R&D 추진전략 도출(연구용역)
 - 「농식품 업사이클링 산업생태계 조성 R&D 방안」('21, 한국산업식품공학회)
 - 부산물 생산 및 관련 활용기업 현황 분석, 농식품 업사이클링 R&D 전략 도출
 - 「농식품 업사이클링 기술 플랫폼 구축 R&D 방안」('22, (주)아이엔비솔루션즈)
 - 부산물 종류별 활용 기술, 유망 소재 발굴, 규제 검토 및 해소 방안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년~'29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5,000	6,6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4) 민간연구개발지원(R&D) (1148-6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10	1148	65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민간연구개발지원(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민간연구개발지원(R&D)	23	25	25	25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연구개발지원) 농협 등 민간에서 농진청 소속기관에 의뢰하는 외부 과제 수행에 있어 필요 시험경비를 조달하는 사업으로, 수입대체경비 예산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 수입대체경비 등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등)
 - *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② 추진경위

- 감사원 지적사항('18.4.)
 - * 농진청 소속 4개 과학원이 농협 등 민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과제를 수행하며 관련 과제 수행 자금을 직접 수령하여 집행하고 있음
- ☞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민간으로 부터 수령한 자금은 국고로 납입해야 함
- '19년 예산 편성시 기재부와 의 협의를 통해 민원의뢰 시험 수행을 위한 수입대체경비성 사업을 신규로 반영
 - * 사업명(민간 연구개발 지원), 예산액(연 98백만원), 형태(계속지원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	78	33	25	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민간 연구소,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5)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R&D) (23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5
명칭	농업기초기반및실용화기술 개발	농업기술경영연구(일반)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 향상모델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빅데이터수집 및생산성향상모델 개발(R&D)	1,395	1,424	1,359	1,359	△ 65	△ 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고도화 및 확산 대응을 위한 농업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 (농업 빅데이터 활용 모델 및 인공지능 개발) 수집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노지, 과수 분야 생산성 향상 모델, 수확량 예측 모델 등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농업기술 개발 연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35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28조,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제35조,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제36조,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 수행 및 자금 지원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6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하며, 이를 위한 연구 수행 및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촌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 *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의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다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을 맺어 실시함.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제11조,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데이터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 (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함

② 추진경위

○ 관련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 ④ AI 활용 확대를 통한 전 산업·지역 확산
-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③ 스마트 데이터 농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11.30. 관계부처 합동)
- 스마트팜 확산방안('18.04.16.,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01.16., 제1회 혁신성장전략회의)
- 기획재정부 주재 스마트팜 간담회('20.03.31., 관계부처)
- 스마트농업확산 종합대책(21.12.23.,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21.3.23.,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2.9., 관계부처 합동)
-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혁신방안'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22.10., 관계부처 합동)

-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3.4., 농식품부)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22.10., 농식품부)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 과기정통부)
-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3.9, 과기정통부)
-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24.03.26, 농식품부)
- 국가 AI 전략('24.9, 관계부처 합동)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농식품부, '25.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농식품부, 25.3.)

○ 추진경위

- 세부사업인 'ICT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핵심기반기술개발(R&D)' 과제가 2018년에 종료됨에 따라 신규 세부과제인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을 2019년부터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995	3,999	1,420	1,424	1,359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수혜자 : 국공립연구소,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사 업 명
(46) 연구정책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2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연구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연구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91	311	334	334	23	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연구정책국(대통령령 제33981호, 2023.12.19)

제10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 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삭제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 농업자재의 등록·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3.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0	269	304	311	3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7) 연구정책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2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연구정책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연구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394	415	427	419	4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 연구정책국 사업운영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연구정책국(대통령령 제33981호, 2023.12.19)

제10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 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 삭제
7.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 농업자재의 등록·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3.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5	431	403	415	41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8) 농업과학관운영 (7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1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농촌진흥사업지원	농업과학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관 운영	644	668	668	668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과학관 운영)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보급성과 조사·연구를 통한 전시 연계의 해설·행사·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으로 대국민 농업·농촌 이해도 및 과학적 소양 증진
-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 성과확산으로 농업·농촌과 우리 청 이미지 제고
 - * 농업과학기술의 효과적인 홍보로 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 온·오프라인 전시관 운영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경험 제공
- 과학사적으로 중요한 농업과학기술을 발굴·전시·행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공 참여를 이끄는 과학 소통의 장 제공
 - * 농업·농촌 이해증진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 농업과학 분야 교육기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관련법령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정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전통 농경·어로 문화의 계승 등), 제46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 홍보 등)

② 추진경위

-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 확산과 농업·농촌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농업과학관 신축 개관(2002.11)
- 전북 혁신도시로 농촌진흥청 이전(2014.8)
- 농업과학관 신축 개관(2015.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문과학관 등록(2016.12)
-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2018.6)
- 농업과학관 내 미래농업관 개선(20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0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98	668	668	668	6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연구관리과)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소비자, 학생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9)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1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수지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38,681	36,504	35,710	35,710	△794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 등 수지차 출연금 지원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의거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설립근거 : 농촌진흥법 제33조(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ul style="list-style-type: none">1.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3.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4.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6.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7.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8.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9.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정부지원 근거 : 농촌진흥법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진흥원은 제33조 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농식품 연구개발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舊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09.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794	37,019	38,681	36,504	35,71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수지차)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농업(경영)인, 농산업체, 농업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한국농업기술 진흥원운영	출연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35,710백만원	국고100% (수지차)	농촌진흥법 제34조 (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 업 명
(50) 치유농업확산센터기반구축 (1136-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3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1,431	3,291	12,686	12,686	9,395	28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치유농업 연구개발 성과확산 및 치유농업 정책 등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중앙단위 지원기관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0.3) 및 시행('21.3)
-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연구센터 필요성 제기 및 신규사업 반영('21년 예결위)
- 제1차('22~'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2.4)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치유농업법·시행령·규칙 개정('24.6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18억원(지방비 56억원)
- 사업기간 : 2021년~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64	1,000	7,200	4,780	3,291	12,686

- 기타: 부지면적 16,765m², 건물연면적 5,996.7m²(지하 1층 ~ 지상 3층)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건설·소유) 농촌진흥청, (운영)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도시민, 치유농업 사업장 및 관련 정책·연구 기관

사 업 명						
(51)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2131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0
명칭	농업신기술보급	신기술보급사업(일반)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농업기술협력지원	63,483	17,444	19,010	18,576	1,132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기술협력지원) 농업현안해결과 정책지원을 위해 종합형 기술기반 마련과 우수기술을 활용한 협력모델 구축 지원
- (농업현안해결기술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성과가 입증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패키지화한 기술보급으로 농업현장문제 해결지원
- (기술보급체계다변화모델구축) 국가 R&D 기술 외에 민간 농산업체, 농업인 등 다양한 기술보급 주체가 참여하여 영농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보급·활용모델 지원
- (식량자급률향상모델 기반조성) 밀, 콩, 쌀가루 이모작 연중생산·가공 체계 확립을 통한 자립형 식량작물 특화단지 사업화로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지원
-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 등을 활용한 농업기술 보급·확산지원으로 산학협력체계 구축
- (중소규모형 밭농업기계화 공동영농확산) 기계발 농기계 활용 영농규모 맞춤형 기계화 우수모델보급
- (논농업 구조전환기술확산 혁신벨트) 기존 고투입 다수확 생산 위주 논농업에서 탄소중립 쌀 적정 생산으로 구조전환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제12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8년 이후 : 체계화된 종합기술로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사업 확대
 - 2021년 이후 :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를 위해 기술보급체계 다변화지원
 - 2022년 이후 : 국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식량작물 특화단지 사업화 지원 도입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계속사업('25년까지 기투자액 : 805억원)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48,919	55,519	64,275	17,444	18,576

- 사업규모 : 167개소(중양 1, 도 9, 시군 15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시범	보조	지자체 보조	3,292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구축	보조	지자체 보조	2,5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위탁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650백만원	100	농촌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식량자급률향상 모델기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3,5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농업기술산학 협력지원	위탁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5,904백만원	100	농촌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중소규모형 발농업기계화 공동영농확산	보조	지자체 보조	1,8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농업구조전환 기술혁신센터	보조	지자체 보조	75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위탁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180백만원	100	농촌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

사 업 명
(52)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2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6
명칭	농업신기술보급	신기술보급사업 (일반)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40, 50,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	5,466	6,871	8,859	7,359	488	7.1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지방농촌진흥기관을 4차 산업혁명의 농업현장 기술적용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농업데이터 현장지원기관으로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농업적 활용 거점기반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스마트 농업기술 모델 확산
-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농업인에게 교육·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장 조성
-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농업인에게 교육·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장의 시설 보완 및 고도화
- (스마트영농구축지원 및 운영평가) 평가회 등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 지원 및 용역 추진
-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모델 확산을 위해 농업인에게 데이터 수집기반 조성 지원
-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농업인 단체에 재배 전주기에 대한 로봇 통합운영 실증을 위한 지원
-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지역 현안에 맞는 농진청 개발 기술의 최적 융합 모델(36개)을 현장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성장-4-18)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으로 생산·유통·소비 디지털 혁신
- (개선방향) 1세대 중심으로 보급되어, 원격제어는 가능하나, 2·3세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기술 활용이 필요('22.6월, 국회예산정책처)
-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동력) 초일류 경쟁우위 확보, (범위) 경제·사회 전분야, (방식) 민간주도 리더십/문화 ('22.9, 관계부처합동)
- (스마트농업 혁신방안) 노지작물 생육진단 AI 모델 및 토양·환경 측정 센서 등 개발·최적화 위해 노지농업 디지털전환('22.10, 농식품부)
- (스마트향후과제) 노지 스마트농업은 식량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등 국가 존속 수단('23.9, 국회입법조사처)
- 스마트팜 확산방안으로 농가지원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교육장('18~'26: 150개소) 확대, 지도직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활용·지도역량 강화(~'27, 450명 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13	6,274	5,471	6,871	7,359

- 기타 : 농촌진흥청, 9개 도농업기술원, 156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지원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수혜자 : 스마트팜 운영농가 및 민간, 전국 주요작물 경영농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보조	지자체 보조	4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9호, 122호
품목별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보조	지자체 보조	1,300	50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보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000	100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모델 확산	보조	지자체 보조	2,400	40	

사 업 명						
(53)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2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0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기술농업지원(일반)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25~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5,610	7,818	6,418	5,778	△2,040	△2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과학영농시설 활용 영농현장 애로기술 신속 해결 및 정부 정책사업(친환경·GAP인증, 공익직불, 가축분뇨 부속도, 잔류농약 분석 등) 지원
- (종합분석실 운영) 종합검정실, 과수과학영농실, 조직배양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으로 화학비료의 적정투입, 고품질 과일생산, 바이러스가 없는 종자 생산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영농 분석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지역 적응성 시험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 현장교육 및 기술보급 확산과 지역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도 증가, 농가 경제적 손실 예방 및 푸드플랜 정책지원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산물안전 분석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임
-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기반 확대) 가축분뇨 의무분석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분석 장비를 지원하는 것임
- (기후변화 대응 꿀벌 수급안정지원) 이상기상 대응 국내 개발 우량 꿀벌 품종 증식·보급과 ICT기반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안정적 꿀벌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증식장 설치 및 스마트 사육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임
-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 영농 정보 및 유용 데이터 등 농업과학 기술의 체계적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지역자원 기반 관비용 여과액비 생산 및 이용기술 현장확산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시범모델 구축 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 (사업관리 및 운영)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현장기술지원, 분석담당 공무원 역량 향상 교육, 성과평가 및 분석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용역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 제25조(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 제13조(친환경 농어업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61조(안전관리계획)
 -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2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② 추진경위

- 1994 : 시·군센터에 신기술실증시험포 및 과학영농시설 설치
- 1999 : 신기술 실증시험포 및 과학시설 운영 공공근로 인력 지원
- 2004 : 시군센터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신기술 실증연구활동 지원
- 2006 : 영농 현장 문제해결 과제비 지원
- 2008 : 안전 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을 위한 유해물질분석장비 지원, 국내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 2012 : FTA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밭농업 직불제 시행, 농업인 의무이행 사항에 토양검정 조사 의무화
- 2019 : PLS 대응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 및 푸드플랜 지원 안전분석실운영
- 2021 : 가축분뇨부숙도 측정 의무화 및 가축분뇨 분석관련 사업 농식품부에서 이관
- 2022 : 가축분뇨 전용 중금속 검사 장비 지원

사 업 명
(54)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기술농업지원(일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50,146	54,686	55,401	54,160	△526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국제교역,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 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에게 농작물의 안정적 먹거리 공급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병해충방제비) 검역병해충¹⁾, 돌발병해충²⁾, 기타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의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제32조(방제 계획)·제35조(공동 방제)·제37조(비용 부담)
- (손실보상금)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발생·확산에 따른 공적방제(식물방역법 제36조 방제 명령)에 따른 손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식물방역법 제38조 손실보상)
- (병해충 진단실(예찰포) 운영) 농업인의 병해충 현장으로 해결을 위한 진단과 처방 및 벼 예찰포 운영을 지원(146개 지자체)
- (병해충 관찰포 운영) 농업인에게 신속한 병해충 정보의 제공과 방제를 위해 벼, 밭작물, 채소, 과수 등 주산 단지 중심 농작물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2,120개소)
- (병해충전문가양성) 지자체 병해충 담당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국가관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지방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
 - * 식물방역법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 (한·아시아비래해충 협력사업) 중국, 베트남 등 에서 우리나라로 비래(飛來)하는 벼 주요 해충의 발생전망을 조기에 예측·분석하여 국내 병해충 발생예측과 사전 방제를 위한 한·아시아 간 효율적 협력을 위한 사업
- (병해충예찰방제운영비)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잠복하고 있는 미발생 과원을 사전에 폐원하는 등 선제적 확산 차단으로 피해 최소화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안전처리 체계 마련
-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중앙+광역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정확도 향상으로 농업분야 기상재해 사전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1)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검역병해충

2)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병해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식물방역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88호)]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 3. 방제의 내용
 -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역학조사 지원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1조의3(식물방제관의 권한 등) ① 식물방제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식물방제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등에 출입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제2항에 따른 출입·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물방제관이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5(분포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포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③ 분포조사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 제31조의6(역학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방법, 조사반의 구성, 그 밖에 역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31조의7(병해충위험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
- 제32조(방제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방제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②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역에 알맞은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 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 방향

나.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다.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 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병해충 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널리 퍼짐으로써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그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24. 1. 23.>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농업 관련 대학·연구소의 연구원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24. 1.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조사지역, 조사방법 및 예찰조사원의 자격, 위촉방법, 경비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시행일: 2024. 7. 24.] 제33조

- 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1. 23.>
- 제35조(공동 방제) ①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다음 각 호의 자 등과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면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제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5. 6. 22.>
 - 1. 시·군·자치구
 -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
 - 3.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7. 14.>
- 제36조(방제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방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 1.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그 식물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 2.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 3.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 4.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농기구, 운반용구 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나 대리인에 대한 그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등 조치명령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에게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 제37조(비용 부담) 시·도지사가 제35조에 따라 공동 방제를 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따라 부담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과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7. 14.]
- 제38조(손실보상) ① 국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6. 12. 2., 2018. 12. 31., 2024. 1. 23.>
 - 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3.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제39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藥劑)를 확보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방제 계획에 따라 방제를 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한 약제를 양여(讓與)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1호)]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농촌진흥법(시행 2022. 3. 1., 법률 제18531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 나.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 다.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 라.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 마.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 바.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 사. 그 밖에 농촌지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들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

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성 병해충 발생 증가 및 해외 신규 병해충 유입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리에 대한 중요성 증대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조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 T/F 운영('09. 9.~'09. 12.)
 - 농식품부, 농진청, 검역본부, 종자원, 경기·전남도 참여
- 농작물 생육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10. 12. 28.)
 -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 작목, 조사대상 시군, 조사 시기 등을 개선·보완
- 식물방역법 개정('11. 7. 14.), 시행('12. 7. 14.)
 - 농진청, 지자체 등에 식물방제관 신설 : 법률 제31조의 2
 - 농진청 및 지자체에 병해충 예찰·방제단 신설 : 법률 제31조의 4
 - 방제업무 위임(농식품부장관→농진청장) 근거조항 마련 : 법률 제46조
- 2012년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병해충 관련 세세부사업 일부와 농식품부의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사업을 이관받아 통합하여 추진
- 2013년 식물방역법 관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개정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20호, 2013. 6. 24.)
 - 농촌진흥청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30호, 2013. 7. 29.)
 - 농촌진흥청 식물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31호, 2013. 7. 29.)
- 2017년 식물방역법 개정 관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개정
 - 발생신고, 역학조사, 위험평가, 과태료 부과, 손실보상금 기준, 예찰조사원 등
- 2024년 식물방역법 개정('24. 1. 23.), 시행('24. 7. 24.)
 -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을 지정, 농작업 기록 의무화, 교육 및 작업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 의무화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2,986	35,345	43,788	54,686	54,160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청(도 농업기술원), 시·군청(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병해충진단실 운영	피보조	자자체 보조	890백만원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병해충관찰포 운영	피보조	자자체 보조	191백만원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병해충 예찰방제단(자방)	피보조	자자체 보조	4,136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병해충 방제비	피보조	자자체 보조	22,814백만원 660백만원	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피보조	자자체 보조	13,167백만원	80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	피보조	자자체 보조	5,446백만원	80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의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피보조	자자체 보조	5,844백만원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기상재해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신규)	피보조	자자체 보조	1,65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사 업 명						
(55) 농촌지원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농촌지원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촌지원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475	489	531	531	42	8.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 ·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영농현장 보급,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 ② 추진경위 : 2007년부터 프로그램 체계 개편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48	463	475	489	5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6) 농촌지원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본청기본경비	농촌지원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촌지원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1,360	1,514	1,436	1,436	△78	△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영농현장 보급,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 ② 추진경위 : 2007년부터 프로그램 체계 개편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27	1,352	1,360	1,514	1,4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7)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1133-43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435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농업연구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R&D)	-	-	2,000	2,000	2,000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제 발생 예측 및 방제기술 개발) 국경 이동성 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 평가 및 선제적 방제 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 표준화된 예찰, 국가 간 이동 예측 및 국내 유입 위험도가 높은 해충에 대한 방제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제31조(방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 방제 등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1. 7. 14., 2011. 11. 14.,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제를 할 때에는 방제 실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시기를 조정하거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1. 방제를 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25-7호) 제10조 예찰계획의 수립, 제20조 방제계획의 수립

제10조(예찰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예찰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예찰 대상 병해충 : 법 제32조제3항의 방제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농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2. 예찰내용 및 방법 등 : 농촌진흥청의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요강(이하 "농작물예찰·방제요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0조(방제계획의 수립) ① 법 제3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해충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제의 기본방향
 2. 방제 대상 지역 및 일시
 3. 방제 대상 병해충의 종류
 4.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공동방제 등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촌진흥청장,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할 필요가 있으면 긴급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긴급방제를 할 때에는 긴급방제계획의 내용과 시행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고시('17.12), 농촌진흥청 제8차 농업과학 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3.6)

-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7-36) 농촌진흥청 식물 방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전략과제 4-4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새로운 식물 병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찰, 진단 및 친환경 방제기술 등 개발

- (국정과제-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실천과제 69-2) 기후적응형 농업을 위한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이행

-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심화 및 해외 유래 돌발 병해충 유입 등의 피해 경감을 위한 스마트 예찰 기술을 개발 및 국제 표준화하여 국가 간 이동성 해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선제적 방제 기술 기반을 구축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국경 이동성 해충은 확산 범위와 피해가 전 세계에 걸쳐 있어, 글로벌 수준의 발생 모니터링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 유입 범위가 확대되고, 피해 대형화됨에 따라 국제 해충 감시체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 부각

- * 세계적으로 농작물 생산량의 40%가 병해충으로 인해 손실되어 연간 2,900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 침입 해충으로 7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FAO, 2023)
- 청은 대륙별 협의체를 통해 식량작물 해충의 조사, 기술협력이 가능하며, 현지에서 해충 조사·분류·방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유입 전 대응기술 개발
- * 아시아 10개국('10~), 아프리카 16개국('20~)과 버뮤구류, 열대거세미나방 모니터링
- (추진경과) 국내·외 유관기관과 국경 이동성 해충 연구 관련 업무협약('24~)
- (농진청) 해외 발생-국내 유입 우려 해충에 대한 발생정보 공유, 해충 예측 모델, 방제제 선발·현장 실증 등 기반기술 개발
- * 해충 위험성 모니터링, 국내 유입우려 해충 예찰, 고정밀 해충 예측 모델, 영상 및 데이터 기반 진단 기술 개발, 해충 예보시스템 구축, 선발 방제제의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등
- (농식품부) 농진청을 통해 국가 해충 발생 현황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여 검역 단계(항만, 공항 등)에서 해충의 진단 및 역학 조사
- (국제협력) 식물 병해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24.6.21)하여 국경 이동성 해충 사업에 대한 국제 전문가 의견 수렴
- * 해충 예찰 표준화 및 이동예측 기술 개발(호주CSIRO, 프랑스INRAe) 및 해외연구실 활용 방제기술 개발(미국ARS) 연구에 참여 희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127억
- 사업기간 : '26년~'30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0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 사업 수혜자 : 국공립연, 대학, 출연기관, 산업체 등(산·학·연 공동연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8) 국제농업기술협력(R&D) (1136-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11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국제농업기술협력(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국제농업기술협력	4,693	5,242	7,785	6,571	1,329	2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농업기술협력) 선진 농업기술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술 교류를 통한 농업현안 해결 및 국내 우수기술의 세계화를 통한 국익제고에 기여
 - (국가간 협력) 농업기술 강국과의 R&D 협력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 및 국내 농업현안 해결 기술 공동 개발로 R&D 경쟁력 강화
 - (다자간 협력) 탄소중립, 가축 전염병 관리 등 전 세계 공동의 농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가, 국제기관과의 협력 연구
 - (북한농업연구) 남북 교류 활성화 대비 북한곡물생산량 추정 및 북한 농업연구
 - (글로벌 표준화 협력) 국내 우수 농산업 자원 및 기준규격에 대한 국가표준법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등록 및 인증 등 글로벌 표준화 연구협력 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2024.1.2.)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83년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 전담부서 신설
 - * 추진배경 : 국제농업기술협력을 통한 우리 농업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도모
- 1991년 대북정책수립지원을 위한 ‘북한 주요 곡물생산량 추정 사업’
- 1999년 국제학술진흥 및 북방농업연구 기능 확대
- 2008년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로 직제 개편
- 2023년 글로벌 농업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농업 R&D 이니셔티브 협력 확대

- 2026년 농식품, 농기자재 분야 국제표준기구에 가입된 국가, 기구 등과의 국제표준 선도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한 표준화 협력 확대
- 국정과제(이행 공약): (성장-4-18) 스마트 데이터농업 확산,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 R&D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8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28	3,695	4,742	4,701	6,571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 사업수혜자 : 국내외 농업인 및 농산업체 등(상호 호혜적 협력사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9)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1136-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1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R&D, 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R&D, ODA)	40,280	43,843	43,843	34,471	△ 9,372	△ 2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동 세부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농업기술전문가(소장, 전문가, 연구원 등)를 파견하여,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여 농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KOPIA 사업과 대륙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공통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와 국가 간 농업기술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FACIs 사업, 소규모 도서국 다자간 농업기술 협력 등으로 구성
-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PIA) 개발도상국 농산업 발전 및 소농의 소득증대를 위해 개도국 소농을 대상으로 국가별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실증·보급하는 것임
- (한-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약, AFACI) 기후변화 등 아시아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 및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하는 것임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약, KAFACI) 아프리카 식량생산 증진 등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 추진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 및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하는 것임
- (한-중남미농식품기술협력협약, KoLFACI) 중남미 소농 대상 신제품 개발 등 당면 문제 해결 사업 추진으로 다자간 이익 도모 및 국가 간 기술격차 해소하는 것임
- (소규모 도서국 다자간 농업기술 협력) 기후위기 등에 따른 카리브 지역의 심각한 식량, 영양안보 위기에 따른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국제기관/기구 분담금)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안보, 기아 해결 등 주요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분담금 지원으로 국제사회 위상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2024.1.2.)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제19998호, 2024.4.17.)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7호, 2024.5.14.)
- 상대국 또는 국제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MOU)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8년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로 직제 개편 및 국외농업기술팀 신설
 - * '09년부터 KOPIA 사업 추진(6개국) 및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출범
- 2012년 기술협력국 국제기술협력과 및 국외농업기술과로 확대 개편
 - * 국외농업기술과 : KOPIA 사업, 국제기술협력과 : 3 FACIs, RDA연수생연합체 등
- 국정과제(안) 수행: 개도국 농업기술공여 및 권역별 농업 공동현안해결로 국제사회 공헌
 - ※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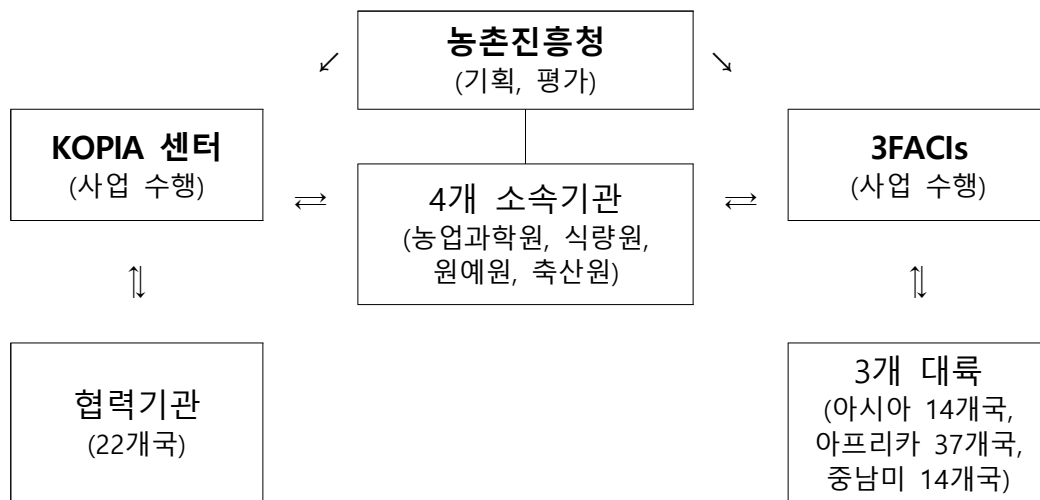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9~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797	33,417	40,766	43,843	34,47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및 국외농업기술과
- 사업 수혜자 : 국내·외 농업인 및 농산업체(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60)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정보화, 보조) (2333-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농촌진흥청)		11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501
명칭	농가경영능력 향상	농촌진흥사업정보화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정보화, 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4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지원(정보화, 보조)	652	652	644	644	△8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본 세부사업은 지역의 농업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농업 기술 및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함께 선도 농업인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인의 정보 활용 능력과 스마트 경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동 내역사업은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추진 및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홈페이지 관리, 농업인 대상 정보화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 1명을 지원하는 것임
- (농업인 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 동 내역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형식의 온·오프라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5조(지방정보화의 추진)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이하 "지역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25조(지자체에 재정 사업비 보조)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2. 농어촌 주민을 위한 정보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력육성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농어촌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및 제65조(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지원)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역의 정보화기반 조성
3. 정보화 낙후지역의 집중 지원
5.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와 그 밖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97 : 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계획 수립(시범구축 : 여주, 횡성)
- 1998 ~ 1999 : 농가경영 목표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농가컨설팅 자료 DB화 및 지도기관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근로사업, 30개소)
- 1999 ~ 2004 :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24개소)
- 2000 ~ 현재 : 농업경영·기술정보 DB 확대 구축 및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정보화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해당 없음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199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24	724	652	652	64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국고 40%, 지방비 60%)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소비자 등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644	40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조(보조금 대상사업범위, 기준보조율)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6조(지방정보화의 추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촌진흥법 제25조(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및 제65조(지역정보화의 추진 및 지원)

사 업 명						
(61)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23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0
명칭	농가경영능력향상	농가경영지원	농촌통계조사분석(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촌통계조사분석	3,477	3,806	4,441	4,441	635	1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통계조사분석) 동 세부사업은 농가 경영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농업정책·연구 및 농촌지도의 기초자료인 국가승인통계(농산물소득조사자료, 농업인복지실태조사자료)를 생산하는 것임.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동 내역사업은 농업정책·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이 지역별·품목별 농산물소득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농업인복지실태조사분석) 동 내역사업은 농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전문조사기관이 협력해 농업인 복지실태를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동 내역사업은 농업기계화사업과 관련한 정책·연구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진흥기관과 전문조사기관이 협력해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 실태와 전국·주산지 주요 농작물의 농작업 기계화율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농업인업무상질병및손상조사) 동 내역사업은 농업인 업무상 재해 경감을 위한 정책·R&D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전문조사기관이 협력해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농업인복지실태조사분석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2. 농어업인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소득 및 작업환경 현황
4. 농어촌의 교육여건
5. 농어촌의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 여건
6.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의 2(실태조사)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 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③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농산물소득조사분석

- 1970년 : 국립농업경제연구소에서 ‘농축산물 표준수익성’ 조사 분석
- 1977년 : 농촌진흥청에서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분석
- 1993년 : 조사기준 세분화(작목기준 → 작형기준)
- 1999년 :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으로 명칭 변경
- 2000년 : 1차 표본설계(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
- 2002년 : 통계청에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통계승인(일반통계 제14302호)
- 2007년 : 2차 표본설계(서울시립대학교) : 모집단 노후화
- 2010년 : 통계청의 통계승인 작목 확대 : 43작목 → 58작목
- 2012년 : 3차 표본설계(서울시립대학교) :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

- 2013년 : 조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영기록 시범실시(500농가)
- 2014년 : 경영기록 확대(1,000농가)
- 2016년 : 사회·경제적 변인 및 유통요인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 제고
- 2017년 : 4차 표본설계(우석대학교) : 표본 대표성 제고
- 2018년 : 경영기록 전체농가(5,300농가)로 확대
- 2019년 : 병행조사(기록조사 3,800농가 + 면접조사 1,500농가)
- 2020년 : 경영기록 전체농가(5,300농가) 조사로 환원
- 2021년 : 병행조사(기록조사 3,800농가 + 면접조사 1,500농가)
- 2022년 : 도광역조사 시범확대(4개소 전남·경북·충북·제주)
- 2024년 : 기록·면접조사 기반 도광역조사 5개소(전남·경북·충북·제주) 실시
- 2025년 : 도광역조사 중심 청년인턴제도 도입

○ 농업인복지실태조사분석

- 2000년 : 「농촌생활지표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농촌진흥청)
- 2004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 2004년.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농림부 외주용역)
- 2008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및 실시
- 2008년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3년 :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하여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 2013년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등 변경 승인 및 조사 실시
- 2016년 : 통계승인번호 변경 제11437호('04. 8. 31.) → 제114037호('16. 8. 28.)
- 2019년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

- 1985년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농업기계 이용실태, 논벼 기계화율 조사 시작
- 1997년 : 밭작물 기계화율 조사 시작
- 1998년 :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조사기관 변경
- 2007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촌진흥청으로 조사기관 변경
- 2020년 : 밭작물 기계화율 주산지 통계 추가

○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 2009년 : 통계청 승인통계(143003호) 획득

- 2011년 : 표본개편 및 조사표 개편
- 2012년 : 표본개편 및 확대 질병과 손상영역 조사를 짝수년도(질병)와 홀수년도(손상)으로 분리하여 실시 시작, 표본수(6,000→10,020농가 확대)
- 2021년 : 표본수 확대(10,020농가 → 12,000농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53	2,780	3,604	3,806	4,44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농산물소득조사분석(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율 100%), 농업인복지 실태조사분석(일반연구비), 농업기계이용실태조사(일반연구비), 농업인업무상질병 및손상조사(일반연구비)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전문조사기관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등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보조	지자체 보조	3,460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대상사업범위, 기준보조율)

사 업 명						
(62)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2334-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7
명칭	농가경영능력 향상	농가경영지원(일반)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을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데이터기반 농업활성화	7,721	7,942	9,305	9,305	1,363	1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데이터기반농업활성화
- (내역사업1) 농업개발기술 확산지원
 -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분석, 진단, 처방을 수행하는 국내유일 농업경영 사업과 농업 R&D 현장적용성 향상을 위한 경제성 분석
- (내역사업2) 농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 농식품 소비자패널(1,350가구) 가구의 농식품 구매 내역을 조사·분석하여 생산된 정보 활용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 R&D 전략 개발과 소비자 수요 반영 농산물 생산 의사결정 지원
- (내역사업3)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
 -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확산을 위한 농가 현장 품목별 전주기 재배데이터 (환경, 생육, 수량) 수집 및 스마트농업인력 양성
- (내역사업4)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 고도화
 - 쌀 수급안정 정책지원(선제적 쌀 생산량 예측 → 생산량 조절)을 위해 과학적이고 적시성 높은 벼 작황정보(벼 재배면적, 생산량 등) 제공 지원
- (내역사업5)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확산
 - 수출국 맞춤형으로 K-농업기술 패키지를 현지에 적용하여 투입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K-농업 수출 모델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내역사업 1 농업개발기술 확산지원, 내역사업 2 농식품 구매정보 DB 구축>

- 농촌진흥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법률 제19878호, 2024.7.3.)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34357호, 2024.4.3.)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내역사업 3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

<농촌진흥법>

-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업과학기술정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활용 촉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

- 제9조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력·시설·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 (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2.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방안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4. 데이터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5.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신직종의 정착 지원 방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내역 4 쌀 수급안정 지원 벼 작황정보 예측기술 고도화>

- 농촌진흥법 제11조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법률 제19878호, 2024.7.3.)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34357호, 2024.4.3.)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내역 5 K-농업기술 활용 해외진출 모델 확산>

- 농촌진흥법 제5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제12조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법률 제19878호, 2024.7.3.)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34357호, 2024.4.3.)

제2조(농촌진흥사업의 범위) ①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연구개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농업 분야 기후변화의 적응과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에 관한 연구
2. 농업경영, 농산물 유통·마케팅, 농업 정보화 및 농업인 복지에 관한 연구
3. 농업인·농촌의 현장어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농업”이라 한다) 관련 연구
5. 농업 기초 과학기술 및 기초 농산물, 수출 유망 작목(作目)에 관한 연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 연도: 2024년

- 추진경위

-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농업기술의 활용과 확대를 위하여 “데이터기반 농업활성화” 사업 신설
- 국가의 본질 기능인 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경영분석과 진단, 처방 등을 위한 도구(Tool) 개발 등 기술경영(MOT) 사업과 연구성과 현장적용성 향상을 위한 경제성 분석 추진
- 농식품 소비자패널 가구의 농식품 구매 내역을 조사·분석하여 생산된 정보 활용 소비자 지향적인 농업 R&D 전략개발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의사결정 지원
-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의 환경, 생육(초장, 엽수 등), 생산량 등 재배 전주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농산물 품목별 최적생산 유도

- 쌀값 변동성 완화를 위해 사후적 수급정책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사전적 쌀 수급정책으로 정책방향 전환 검토 중(농식품부)
 - ☞ 파종 후 재배면적·작황(생산량) 관측결과 공급과잉 예상으로 추가 조절이 필요한 경우 수확 전 수급 조절 추진을 위해 작물모형 - 드론 - 위성영상을 활용한 다중 관측체계를 구축, AI-딥러닝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량 예측 고도화 병행 요청(농식품부 → 농진청)
- 수출대상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과 품목을 현지에서 실증하여 수출 확대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수출모델을 확산

- 관련 관계부처 합동 계획

■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19.01.16., 제1회 혁신성장전략회의)

*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촉진으로 데이터·인공지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 ☞ 농업 분야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시장형성,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유기적인 융합 등 농업 분야 데이터 가치사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 심의·의결(‘21.3.23.,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 ☞ (분야1)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 데이터 수집과 관리: 농업현장 데이터 수집 확대, 표준화, 품질관리

- ☞ (분야2) 농업생산기술의 디지털 혁신

- ☞ (분야3) 유통, 소비, 정책 지원 디지털 농업 기술

* 농업 데이터 기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분야·규모 확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도입 연구지원 필요

■ 스마트농업확산 종합대책(21.12.23.,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합동(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농진청 등))

- ☞ 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② 스마트농업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③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목표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2.9., 관계부처 합동)

* (전략 II)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 (세부과제 3) 농·축·수산업의 新 성장동력화

- ☞ 데이터 수집·활용 및 기술개발 등 스마트농업 확산 기반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수집 분야·규모의 지속적 확대 필요

- ☞ 스마트농업 기술 서비스 현장보급 및 확산을 위한 농업 데이터 기반 모델 및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도입 연구지원이 필요

■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식품부, '23.4)

- * 미래적합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및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 농업빅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전문가 육성 R&D 사업인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 데이터조사요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농업빅데이터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스마트팜 관리 및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을 보유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촌 구축 가능

■ **청년인턴 활성화계획**(23.1.17. 국무회의)

- * 청년들의 일 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인턴 적극 채용 요망 및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1.17 국무회의)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인원 지속 확대 추진
- * '24년도 채용인원 통보(23.4월) 및 채용·운영 예산 편성 필요
- ☞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에서 본사업을 '24년도 청년인턴사업으로 선정('23. 6. 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7,938	7,942	9,30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비 100%) 및 지자체 보조(국비 5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업정책결정자, 연구·지도직 공무원, 농업인, 스마트팜 및 농업 관련 산업체, 미취업 청년층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재배 전주기 DB 구축	보조	지자체보조	2,714	50	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농업개발 기술확산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405	50	

사 업 명
(63) 기술협력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3
명칭	농촌진흥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82	88	100	100	12	1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협력국 기본경비 - 인건비)
- 기술협력국 사업운동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013호, 2023.12.29.)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23., 2013. 9. 9., 2015. 1. 6.>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2009. 8. 25.>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 5. 23.>
14. 삭제 <2012. 5. 23.>
15. 삭제 <2012. 5. 23.>
16. 삭제 <2012. 5. 23.>
17. 삭제 <2012. 5. 23.>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

② 추진경위 : 기술협력국 신설(2008.10.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2	84	86	88	10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 사업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4) 기술협력국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3
명칭	농촌진흥행정지원	본청기본경비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기술협력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317	360	371	370	10	2.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술협력국 기본경비 - 총액인건비비대상)
- 기술협력국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예산 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제5절 국제협력사업

제22조(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제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외국 등과의 협력)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 상대국에 협력 상대국과 공동으로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③ 농촌진흥청장은 다수 국가와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여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의 추진방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

제24조(농업기술 연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고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농업 관련자에 대하여 농업기술 연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농업 관련자를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013호, 2023.12.29.)

제12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5. 23., 2013. 9. 9., 2015. 1. 6.>

1.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2.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와의 협력사업
3. 국외농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전문가 국외 파견에 관한 사항
4. 개발도상국의 지속적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5.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분석
6.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활용지원

7. 삭제 <2009. 8. 25.>
8. 농업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9. 주요 연구개발·보급사업의 경영분석 및 품목별 국제 경쟁력 분석
10. 농업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성과의 경제성 분석
11.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12. 농업경영체의 소득조사·분석 및 농장경영관리기법 개발 등 경영·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2. 5. 23.>
14. 삭제 <2012. 5. 23.>
15. 삭제 <2012. 5. 23.>
16. 삭제 <2012. 5. 23.>
17. 삭제 <2012. 5. 23.>
18.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 및 교육훈련 평가
19.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20.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21. 농촌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3.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24.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지원

② 추진경위 : 기술협력국 신설(2008.10.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9	347	323	360	37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5) 농업과학기술기초기술연구(R&D)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과학기술기초기술연구	농업과학기술기초기술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기술기초기술 연구(R&D)	72,162	82,276	76,051	76,051	△6,225	△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 구축 및 농생명산업 혁신을 위한 농업과학 기초기반기술의 개발과 실용화
- (농업기반융복합·현장실증연구) 농업과학기반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연구 추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분야간 요소기술 융복합 기술 개발
- (농업환경연구) 기후변화 및 생태계 연구, 농경지토양·양분·물관리,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 개발
- (농업생물연구) 미생물, 곤충자원(누에, 꿀벌 등)의 산업화 기반 구축 및 농업생물 자원의 신가치 창출
- (농산물안전성연구) 농산물 생산 과정의 화학물질, 미생물 안전관리, 병해충·잡초 종합관리기술 개발, 농자재 안전성 평가체계 구축
- (농업공학연구) 농작업의 기계화·자동화·로봇화,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농업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 개발
- (농업생명자원연구) 농생명 빅데이터 융합·활용으로 디지털육종 기술개발, 정밀육종 기술 활용 유용소재 개발, 바이오신작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슈퍼컴퓨팅 활용 분석 및 지원환경 구축 등
- (농업유전자원연구) 국내외 유용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특성평가를 통한 생물자원의 국가주권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운영
- (농촌환경안전연구) 농촌환경자원 보존·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유지, 농촌 소멸 대응 농촌 활성화 지원,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확보 및 작업편이성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 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48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21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8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추진

- 1962년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설립
- 1973년 농업기술연구소로 개칭
- 1994년 농업과학기술원 설립(농업기술연구소,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약연구소 통합 및 국립농업자재검사소의 일부 기능 흡수)
- 2008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 관련 국정과제 :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9.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3,960	84,572	73,057	82,276	76,05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업관련 정책부서, 농업인, 농산업체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6)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1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7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농업과학기반연구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기반구축	1,757	630	1,236	1,223	593	9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수디지털 재배기술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실증을 위한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 연구소 기반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법률 제19878호),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동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648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7호), 및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 (국정과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8.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② 추진경위

- 사업 추진

- (2021.11)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건립 서면질의(상임위 소위, 김태흠 의원)
- (2021.12) 2023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증액 제기 및 확정
 -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 기본조사 용역비 1.5억원 반영
- (2022.12)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2023.3)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 업무협약 및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약정 체결
- (2023.5) 공공건축 건축기획서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 완료
- (2023.7)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계약
- (2023.10) 건축설계 기술용역 착수
- (2023.12) 설계 및 기술용역 중지(부지내 암반 발견)
- (2024.1) 부지변경 관련 협의(충주시)
- (2024.4) 대체부지 현장조사 및 예정지 선정
- (2024.8) 부지변경 및 총사업비 협의조정 완료(기재부)
- (2024.11) 국유재산 사용승인 완료(기재부)
- (2025.5) 기본설계 완료 및 적정성 검토 요청
- (2025.7) 부지매입 관련 업무협의(충주시)

- (2025.8) 계획설계 적성성 검토(조달청)
- (2025.9) 추정 확정(충주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87.91억원
- 사업기간 : 2023 ~ 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50	783	630	1,223

- 기타 : 부지면적 180,862m², 건물연면적 6,158m²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국고 90.9%, 지방비(충주) 9.1%
-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참여기관) 충북 충주시
- 사업 수혜자 : 농업관련 정책부서, 과수재배 농가, 농산업체 및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7) 농업과학기술기반연구정보화 (2333-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503
명칭	농가경영능력 향상	농촌진흥사업정보화	농업과학기술기반연구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기술기반연구 정보화	1,897	3,200	2,908	2,720	△480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과학기반연구정보화) 농업과학기반연구 연구성과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정보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전산실 HW·SW의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농업기상장비 운영 등을 통한 연구·행정업무 지원
 - * (정보서비스 운영 및 개선) 농업과학기반분야 연구성과를 농업인 및 농업현장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 대표홈페이지 등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사업임
 -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농업과학기반분야의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산실 HW·SW의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상용SW 도입, 사무자동화 기기 도입, 농업기상장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기상법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② 추진경위

- 2000년: 농업기초연구사업 효율화를 위한 농업기초연구정보화 추진
- 2002년: 농업해충 표본관리 DB화 및 곤충자원정보 시스템 추진
- 2003년: 버섯자원정보 DB화,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 추진
- 2006년: 농업인건강·안전정보시스템, 유기농업정보시스템 추진
- 2007년: 농업환경지도 웹 GIS 시스템, 전통음식정보관리시스템 추진
- 2008년: 조직개편으로 3개 예산사업을 통합
- 2009년: GIS기반 농업환경정보 등 4개 시스템 구축 추진

- 2010년: 농업환경종합정보 등 3개 시스템 개발
- 2011년: GIS기반 농업환경정보시스템 구축, 농업기상정보서비스 개선
- 2012년: 토양환경정보DB확대 등 6개 시스템 개발개선
- 2013년: 토양환경정보 등 6개 시스템 고도화
- 2014~2015년: 토양환경정보 등 5개 시스템 고도화
- 2016년: 토양환경정보 등 6개 시스템 고도화
-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으로 정보시스템 이전 대상
- 2017년 ~ 계속 : 대표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등 정보서비스 운영, 정보통신 인프라 유지보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38	1,911	1,897	3,200	2,720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업관련 정책부서, 농업인, 농산업체 및 농산물 소비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68) 농업과학원 인건비(R&D) (7102-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0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농업과학원인건비(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원인건비	42,284	43,062	46,076	41,509	△1,553	△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과학원인건비)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운영을 위한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 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03호)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2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② 추진경위

- 1962년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설립
- 1973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로 개편
- 1994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1,212	40,722	42,284	43,062	41,50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농업인, 소비자,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69) 농업과학원 기본경비(R&D, 총액인건비대상) (7118-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0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농업과학원 기본경비 (R&D,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원기본경비 (R&D,총액인건비대상)	2,697	2,764	2,997	2,997	233	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농업과학원 기관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 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03호)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2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② 추진경위

- 1962년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설립
- 1973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로 개편
- 1994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87	2,638	2,707	2,764	2,99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농업인, 소비자,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0) 농업과학원 기본경비(R&D, 총액인건비비대상) (71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0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농업과학원 기본경비 (R&D,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원기본경비 (R&D, 총액인건비비대상)	1,540	1,530	1,576	1,517	△13	△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농업과학원 기관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법률 제18531호)
- 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03호)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3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32호)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② 추진경위

- 1962년 농촌진흥청 식물환경연구소 설립
- 1973년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로 개편
- 1994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55	1,313	1,553	1,530	1,51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농업인, 소비자,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1) 작물시험연구(R&D) (11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국립식량과학원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0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 기술개발	작물연구	작물시험연구(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작물시험연구(R&D)	54,909	61,465	70,634	70,634	9,169	1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작물시험연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작물의 부가가치 제고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 (기초식량작물연구) 식량작물의 품종개발, 육종기술, 재배생리, 병해충관리, 중복부 적응성 향상, 간척지 이용 등 식량작물의 기반 기술 향상
 - (밭작물개발연구) 밭작물 품종개발/육종기술, 논 작부체계/가공용벼 등 논 활용성 증진, 디지털 기술 기반의 노지 밭작물 생산기술 등 생산성 향상 및 정책지원
 - (식품자원개발연구) 농식품 자원의 일반·기능 성분DB, 푸드테크 기술, 발효·가공 기술, 품질기준 설정·관리·평가 등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 및 산업화 지원
 - (고령지농업연구) 감자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 고랭지 배추 병해충 관리, 고랭지 작물 개발 보급 등 고령지 농업의 생산성 향상
 - (소득식량작물연구) 고구마·유채·땅콩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발, 아열대화 대비 신규 소득작물 개발, 농업부산물 활용성 증진 등
 - (작물융복합현장실증연구) 분야 간 연구성과를 융복합하고 부서 간에 협업하여 농산업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농업현장 실용화와 산업화를 촉진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밀산업 육성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1906년 대한민국 권업모범장 설립
- 1962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개편
- 2004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
- 2015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및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916	64,475	55,608	61,465	70,63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농업인, 소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2) 작물연구정보화(정보화) (2333-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11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504
명칭	농가경영능력향상	농촌진흥사업정보화	작물연구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작물연구정보화	746	985	958	930	△55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작물연구정보화) 국립식량과학원 정보서비스 및 인프라의 기본운동을 위한 사업임
- (정보서비스 운영 및 개선) 작물연구정보의 효율적인 공유·활용 체계구축 및 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행정업무 환경 지원을 통해 본원 및 지역소재 기관의 ICT 기반 정보인프라를 구축 하고 운영, 유지관리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의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

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보급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책 건의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신속히 보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년 : 작물연구정보 DB화 및 작물별 전문 홈페이지 구축
- 2001년 : 신기능물질연구정보 DB화, 인공위성 작황분석시스템 구축
- 2002~05년 : 작물별 홈페이지 구축, 작물생장시물레이션, 지역지대별 최적작부체계 시스템 구축
- 2006년 : 작물생장시물레이션 시스템 고도화
- 2007년 : 벼 DNA 마커 DB 및 마커분석 시스템 구축
- 2008년 : DNA기반 콩판별 시스템 구축
- 2009~10년 : 직제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및 통합 DB구축
- 2011~12년 : 내부업무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홈페이지 구축
- 2013년 : 식량작물정보포탈(3개분야, 14종 시스템) 구축
- 2014년 : 야콘, 식물자원도감 모바일 웹 구축
- 2015년 : 미래기후 작물생장 예측시스템 구축
- 2016년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식량작물정보포탈 개선
- 2017년 : 표준재배용 품종 분양관리시스템 구축
- 2018년 : 직무육성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 2019년 : 식량작물연구데이터 품질관리 및 오픈API 개발
- 2020년 : 신품종 종자분양관리 및 미래기후작물생장예측시스템 개선
- 2021년 : 육종자원DB 구조 변경 및 데이터 정비, 신품종 종자분양기능 확대
- 2022년 : 식량작물 생산물관리 통합, 벼 교배친 정보 관리, 유전정보시스템 연계
- 2023년 : 대표 홈페이지 등 정보서비스 및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 2024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
- 2025년 : 토양·환경DB 구축, 벼 등 17개 작물 육종데이터 정비 및 기능 개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5	779	749	985	93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식량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식량작물 및 식품 관련 연구기관, 단체, 농업인, 일반인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73) 식량과학원인건비(71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3	국립식량과학원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2	101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식량과학원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식량과학원인건비	28,084	29,371	32,710	32,704	3,333	1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량과학원 인건비) 작물연구(R&D) 세부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법률 제19878호) 제4조 제4항 및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21호) 제24조~제31조, 제39조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708호) 19조~25조, 제37조~제39조

② 추진경위

- 1906년 대한민국 권업모범장 설립
- 1962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개편
- 2004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
- 2015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및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063	29,894	29,858	29,371	32,7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청원경찰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 업 명
(74) 식량과학원 기본경비(R&D,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3	국립식량과학원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식량과학원 기본경비 (R&D,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식량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892	1,983	2,247	2,247	264	1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량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본원 7과 2센터, 4출장소, 2부, 2연구소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대상 연구기관 운영경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법률 제19878호) 제4조 제4항 및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21호) 제24조~제31조, 제39조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708호) 19조~25조, 제37조~제39조

② 추진경위

- 1906년 대한민국 권업모범장 설립
- 1962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개편
- 2004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
- 2015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및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41	1,826	1,920	1,983	2,2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5) 식량과학원 기본경비(R&D,총액인건비비대상) (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3	국립식량과학원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식량과학원 기본경비 (R&D,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식량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1,487	1,567	1,614	1,439	△128	△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식량과학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본원 7과 2센터, 4출장소, 2부, 2연구소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대상 연구기관 운영경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법률 제19878호) 제4조 제4항 및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21호) 제24조~제31조, 제39조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708호) 19조~25조, 제37조~제39조

② 추진경위

- 1906년 대한민국 권업모범장 설립
- 1962년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개편
- 2004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으로 개편
- 2008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으로 개편
- 2015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 및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38	1,449	1,487	1,569	1,43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76) 농업과학기술교육 (24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3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	농업과학기술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과학기술교육	3,205	3,257	3,501	3,501	244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훈련개발운영)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현장 보급 촉진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이러닝콘텐츠개발운영)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최신 영농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e-러닝 교육 운영 및 모바일 웹 교육환경 구축
- (교육훈련환경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교육시설 개·보수 및 교육생 휴게공간 조성, 전문 교육시설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949년 중앙농업기술원 기술교도부 기술수련과 설치
- 1962년 농촌진흥청 수련소 설치 *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1973년 농촌진흥청 농민훈련과 설치
- 1998년 행정자치부 공무원 병설교육기관으로 승인
- 1999년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기술연수과로 직제 조정
- 2008년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로 직제 조정
- 2012년 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로 직제 조정
- 2014년 수원에서 전북 전주시 혁신도시로 이전
- 2017년 스마트팜농업기계교육관 개관
- 2019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 내역사업인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을 세부사업으로 분리
- 2021년 농업기계 비가림 실습장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628	3,246	3,250	3,257	3,501

- 기타 : 200개 교육과정 55,000명(집합교육 5,000명, e-러닝 50,00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신수요자(농과계대학생, 유관기관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77)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인건비 (710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2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인건비	2,248	2,342	2,506	2,497	155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인건비) 농업기술의 현장보급 촉진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교육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36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65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484호)

② 추진경위

- 2019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기관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	-	2,291	2,342	2,49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청원경찰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78)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240	296	329	329	33	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 농업기술의 현장보급 촉진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교육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36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65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484호)

② 추진경위

- 2019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58	264	272	296	329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79)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71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2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663	658	678	667	9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기본경비) 농업기술의 현장보급 촉진과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교육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법률 제17316호), 농촌진흥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36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65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식품부령 제484호)

② 추진경위

- 2019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설함에 따라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2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5	659	664	658	66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직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80)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기반구축 (1136-31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18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농업정책지원 및 기반육성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 실증센터기반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 실증센터기반구축	3,813	3,610	9,218	7,084	3,474	9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재배 기술의 체계적인 실증, 확산기반 운영과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아열대작물 컨트롤타워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법률 제17316호), 시행령(대통령령 제30367호),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3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대통령령 제26729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2(기후변화 평가)
- (국정과제) 71(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 (실천계획)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개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기후변화대응 농업기술개발 중장기계획

② 추진경위

- 시도 경제협의회 안전자료 검토요청('18.7.6., 농식품부)
 - 건의사업명 : 에코 생태식물공원 및 기후변화 농식품 연구단지 조성
 - 요청내용 : 「기후변화 농식품 연구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 검토 요청
 - ⇒ (검토결과) : 신적응 작물 중심 연구나 실습농장, 교육시설 및 전시실 조성사업은 타당성 분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 검토 필요('18.7.6. 회신, 농진청)
- 전남 지자체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요청('18.7.12., BH)
 - ⇒ (검토결과) : 위와 같음('18.7.12. 회신, 농진청)
- 시도별 지역현안 우선사업 검토의견 작성 요청('18.8.2., 군발위)
 - 소관부처 변경 : 기후변화 연구단지 조성(농식품부 → 농진청)
 - ⇒ (검토결과) : 위와 같음('18.8.2. 회신, 농진청)

- 군발위 제출 자료 제공 요청('18.8.8., 국조실, 농식품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출자료(8.2) 송부('18.8.8. 회신, 농진청)
- 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19.12., 국회 예산심의, 서삼석의원 등)
- 지방자치 단체 대상 부지선정 공모 추진 완료('20.4~'20.6, 농진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409억원
- 사업기간 : 2020~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9	4,729	7,442	3,610	7,0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민, 농산업 관련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81) 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R&D,책임운영) (123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1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R&D,책임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특작과학원인건비 (R&D,책임운영)	29,976	31,647	33,862	33,104	1,457	4.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특작과학원 인건비(R&D,책임운영)) 국가행정사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2조(법률 제19878호)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79호)

② 추진경위

- 1953년 정부의 공식 직제로 대통령령에 의해 중앙원예기술원 설립
- 1957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시험장으로 변경
- 1991년 원예분야의 기술수요 증가로 과수연구소를 분리 신설
- 1994년 과수연구소와 원예시험장을 통합하여 원예연구소로 발족
- 2004년 영남농업연구소 부산원예시험장과 시설재배과를 통합하여 시설원예시험장 신설
-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직제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0,186	30,514	30,260	31,647	33,1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2)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123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2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 (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 (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3,101	3,038	3,266	3,266	228	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특작과학원 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국가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2조(법률 제19878호)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79호)

② 추진경위

- 1953년 정부의 공식 직제로 대통령령에 의해 중앙원예기술원 설립
- 1957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시험장으로 변경
- 1991년 원예분야의 기술수요 증가로 과수연구소를 분리 신설
- 1994년 과수연구소와 원예시험장을 통합하여 원예연구소로 발족
- 2004년 영남농업연구소 부산원예시험장과 시설재배과를 통합하여 시설원예시험장 신설
-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직제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68	2,913	3,053	3,038	3,1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3)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123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25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 (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특작과학원기본경비 (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486	547	563	493	54	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특작과학원 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국가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2조(법률 제19878호)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0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79호)

② 추진경위

- 1953년 정부의 공식 직제로 대통령령에 의해 중앙원예기술원 설립
- 1957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시험장으로 변경
- 1991년 원예분야의 기술수요 증가로 과수연구소를 분리 신설
- 1994년 과수연구소와 원예시험장을 통합하여 원예연구소로 발족
- 2004년 영남농업연구소 부산원예시험장과 시설재배과를 통합하여 시설원예시험장 신설
-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직제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68	2,913	486	547	5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4) 원예특작시험연구(R&D, 책임운영) (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원예특작시험연구(R&D, 책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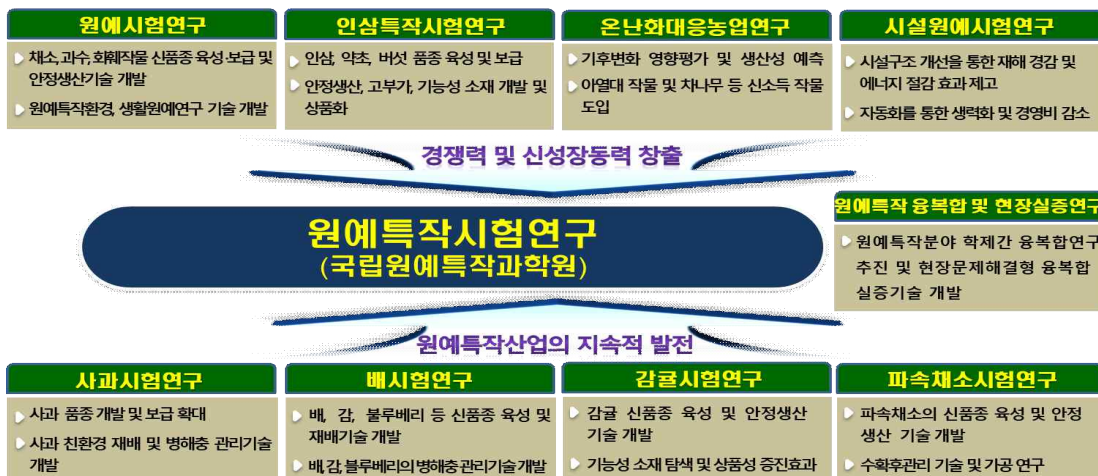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특작시험연구	64,587	74,889	77,355	77,355	2,466	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육성과 보급 확대, 안정재배 기술 및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원예시험연구)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안정생산기술 개발,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을 통한 유통시스템 개선, 원예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향상 지원
 - (인삼특작시험연구) 인삼·약용작물의 신품종 육성, 안정생산기술 개발, 품질향상 연구, 기능성 소재 탐색 및 안전성 평가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 (온난화대응농업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및 병해충 영향평가, 아열대작물 도입과 현장 적응성 검토 및 생산기술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시설원예시험연구) 시설구조 개선, 자동화 기술 개발, ICT 융합 핵심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시설재배 노동력 절감 등 경쟁력 향상
 - (사과시험연구) 소비자 맞춤형 사과 품종 육성, 노동력 절감 안정생산 기술 개발, 친환경 병해충 종합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
 - (배시험연구) 배·단감·블루베리의 고품질 품종 육성, 안정재배기술 개발, 유전자원 평가 보존을 통한 육종 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
 - (감귤시험연구) 감귤 신품종 육성, 기능성 소재 탐색 및 브랜드 감귤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파속채소시험연구) 신품종 개발, 국산 종자 보급률 향상, 안정생산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 (원예특작 융복합 및 현장실증연구) 원예특작분야 학제간 융복합 연구 추진 및 현장문제 해결형 융복합 실증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법률 제14527호),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763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21074호)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과 산업법 하위법령(법률 제14483호)
- 한의약육성법(법률 제11524호)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법률 제14839호)
-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30호)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농촌진흥청 2016-16호)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16.12.27.)
- 한의약육성법(법률 제11524호)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법(법률 제14839호)
-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030호)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73호)
-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00호)

② 추진경위

- 1953년 정부의 공식 직제로 대통령령에 의해 중앙원예기술원 설립
- 1957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원예시험장으로 변경
- 1991년 원예분야의 기술수요 증가로 과수연구소를 분리 신설
- 1994년 과수연구소와 원예시험장을 통합하여 원예연구소로 발족
- 2004년 영남농업연구소 부산원예시험장과 시설재배과를 통합하여 시설원예시험장 신설
- 2006년 책임운영기관 전환
-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으로 직제개편
- 2010년 도시농업연구팀 설치
- 2013년 저장유통연구팀 설치
-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기관 이전 및 도시농업과 신설
- 2016년 저장유통과 신설(저장유통연구팀 과 단위 승격, 한시조직 운영)
- 2017년 도시농업과 정규직제화(← 도시농업연구팀 과 단위 승격)
- 2018년 저장유통과 정규직제화(← 저장유통연구팀 과 단위 승격)
- 2021년 인삼특작이용과 정규직제화(← 인삼특작이용팀 명칭 변경)
- 2022년 파속채소연구소 정규직제화(조직 신설)
- 2025년 북부원예시험장 신설(조직 신설)

□ 주요내용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2. ~ 계속
- 사업규모 : 9개 내역사업, 77,355백만원(시험연구비 : 35,167백만원, 건설비 8,040, 장비비 3,356, 기타연구비 30,792)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민, 농산업 관련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85) 파속채소연구소구축(R&D) (12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 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6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파속채소 연구소구축	2,881	12,310	2,498	2,498	△9,812	△7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산업적 파급력이 큰 파속채소의 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파속채소연구소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법률 제14527호),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63호)에 의거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과학기술 진흥 시험연구사업 수행
- (국정과제) 71(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② 추진경위

- (2015. 11) 파속채소연구실 개설(식량원 바이오에너지연구소 내)
- (2021. 9) 파속채소연구소 소요정원(+3명) 확보
- (2021. 10) 파속채소연구소 기본계획 수립
- (2021. 10)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을 위한 원예원-무안군 MOU 체결
- (2022. 2) 파속채소연구소 정식직제 신설 및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 (2022. 12) 파속채소연구소 구축사업 국회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3억원
- 사업기간 : 2023~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452	3,830	12,310	2,49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민, 농산업 관련 종사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86) 원예연구정보화(정보화,책임운영) (1231-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5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원예특작연구(책임운영)	원예연구정보화 (정보화, 책임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원예연구정보화	820	869	907	907	38	4.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예연구정보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보서비스 및 인프라의 기본운동을 위한 사업임
- (정보서비스 운영 및 개선) 원예특작분야 연구결과 및 기술정보를 대국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대표홈페이지 등 원예특작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임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원예특작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공공요금, 업무관련 출장 등을 운영 관리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성 보호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보호조치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이 경제적 · 지역적 ·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 · 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년 정부공공근로사업 추진 이후 계속사업
- 2008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기능 확대
- 2009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 통합 구축
- 2014~2015년 RFID기반 과수 시험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2016년 영상회의시스템 고도화 및 사무용 전산장비 도입사업
- 2021년 지역기관 노후 네트워크 교체 및 정보보안 고도화 사업
- 2023년 연구데이터 수집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
-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2010년~계속)
- 원예특작정보시스템 통합 위탁사업 추진(2010년~계속)
-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으로 정보시스템 이전
- 2025년 디지털 육종 전환 지원을 위한 원예특용작물 육종관리기능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0	773	820	869	90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농업인, 학계, 소비자, 내부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87) 축산과학원인건비(R&D,책임운영) (1232-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1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축산연구 (R&D,책임운영)	축산과학원인건비 (R&D,책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축산과학원인건비 (R&D,책임운영)	26,549	28,783	30,798	29,240	457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과학원인건비(R&D,책임운영)
 - 국가행정사무 수행을 위해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청원경찰법」
- ② 추진경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1078호, 2008. 10. 8. 전부개정)에 의거 “축산과학원”에서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844	26,440	27,074	28,783	29,240

- 기타: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사 업 명
(88) 축산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1232-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2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축산연구 (R&D,책임운영)	축산과학원 기본경비 (R&D,책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축산과학원기본경비 (R&D)책임총액인건비대상)	2,559	2,693	2,801	2,801	108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과학원 기본경비_총액인건비대상): 국가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추진경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1078호, 2008.

10. 8. 전부개정)에 의거 “축산과학원”에서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23	2,483	2,615	2,693	2,80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89) 축산과학원기본경비(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1232-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25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축산연구 (R&D,책임운영)	축산과학원 기본경비 (R&D, 책임, 총액인건비비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축산과학원기본경비 (R&D)책임총액인건비비대상	428	470	413	413	△57	△1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과학원 기본경비_총액인건비비대상): 국가행정사무 수행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정부조직법」,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② 추진경위: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1078호, 2008. 10. 8. 전부개정)에 의거 “축산과학원”에서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1	435	428	470	41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사항 없음

사 업 명
(90) 축산시험연구(R&D, 책임운영)(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국립축산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축산연구(책임운영)	축산시험연구(R&D,책임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축산시험연구 (R&D,책임운영)	48,938	53,513	53,755	53,755	242	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탄소중립 저탄소 축산기술, 가축분뇨 비농업계 이용 확대, 데이터 기반 가축 정밀 관리 등 국정목표 이행을 위해 정책을 뒷받침하는 축산기술 개발
- 국가단위 가축개량, 우량계통 육성 및 조사료 국산품종 개발·보급, 사료비 절감 등 농가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술 개발·보급으로 경영안정 지원
- 국민안심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관리, 농장·반려동물 복지 개선, 가축유래 신소재 개발 등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바이오 융·복합 활용 기반기술 개발
- (축산시험연구) 국민·정책·현장 중심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디지털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토종가축 활용 계통 개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동물복지·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 (축산생명환경연구) 기후변화 대응, 축산냄새 저감 및 가축분뇨처리, 형질전환돼지 생산, 축산물 및 축산식품 품질향상, 가축 영양생리 대사 및 사료 안전성 등 관련 기술 개발·보급
- (축산자원개발연구) 국가단위 가축개량·보급, 젖소의 고품질·기능성 우유 생산, 돼지 종돈선발 및 친환경 관리,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등
- (가축유전자원연구) 가축유전자원 수집·보존을 통한 다양성 확보, 특성평가 및 활용
- (한우연구) 우량한우 선발·보급,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 및 사료비 절감
- (가금연구) 닭·오리 능력개량 및 종자 개발, 친환경·고품질 가금 생산 등
- (난지축산연구) 제주재래가축의 개량, 증식, 보급 및 관리·활용 기술
- (축산융복합현장실증연구) 축산분야 학제 간 융복합 연구 추진 및 현장문제해결형 축산기반 융복합 실증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정부조직법」 (법률 제20289호) 제37조(농림축산식품부)제3항에 의거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 축산 시험·연구 수행
- 「농촌진흥법」 (법률 제19878호)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4918호)에 의거 축산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에 의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

- 「축산법」(법률 제20581호)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및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가축 개량목표 설정, 개량사업 점검·평가, 우수 종축업체 인증 및 지도·점검 등 임무 수행
- 「사료관리법」(법률 제19752호)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사료공정의 설정 절차 등), 제22조(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의거 사료공정의 설정, 변경 또는 폐지 등 절차 검토를 위한 검정기관 임무 수행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543호)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의거 국내 가축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임무 수행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0503호) 제47조의2에 의거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조사·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축산, 목초, 사료작물 적지 및 생산성 변화 조사 평가 임무 수행

② 추진경위

- 공공성, 현장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축산정책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성과 창출·확산 강화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농업연구개발 혁신전략 실천계획’ 수립(’23.2) * 전략체계: 3대 전략 - 9대 혁신과제 - 21 세부 이행과제
- 1952. 5.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
- 1962. 4.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으로 개편
- 1969. 4. 축산시험장에서 국립종축장 분리 설립
- 1994. 12.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을 통합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
- 2001. 1.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
- 2004. 1.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개편
(축산기술부 → 축산생명환경부)
- 2007. 6.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개편
- 2008. 10.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확대개편
- 2009. 9.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
(초지사료연구센터 → 초지사료과, 제주출장소 → 난지축산시험장)
- 2015. 1.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
(한우시험장 → 한우연구소, 가축유전자원시험장 → 가축유전자원센터, 난지축산시험장 → 난지축산연구소)

- 2016. 5.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가금과 → 가금연구소)
- 2018. 4.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가축질병방역팀 → 가축질병방역과)
-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동물복지연구팀 신설)
- 2024. 1.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신설)
- 2025. 2. 국립축산과학원내 기구 변동

(동물바이오공학과·동물유전체과 → 동물바이오유전체과, 축산물이용과 → 축산푸드테크과, 축산환경과 → 스마트축산환경과, 동물영양생리과 → 가축정밀영양과, 동물복지연구팀 → 동물복지과, 초지사료과 → 조사료생산시스템과, 한우연구소 →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소 →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소 → 난지축산연구센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748	57,151	48,938	53,513	53,7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수혜자 : 축산농민 및 소비자, 농업관련 정책부서 및 산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91)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 (1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9	축산자원개발부		100	101
명칭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축산연구(R&D, 책임운영)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R&D)	54,335	40,254	53,138	53,138	12,884	3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 지역공약 이행과 지속가능한 축산자원개발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에 축산자원개발 연구단지 조성**
- (목표1)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완벽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
- (목표2) 첨단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
- (목표3) 친환경·동물복지 및 특수가축 등 축산자원개발 연구 범위 확대 및 역량 강화
 - * (문재인정부) 기재부 정책과제 1-(4)-⑥ 천안 축산과학원 4차산업 제조혁신파크 조성
 - * (윤석열정부) 충남공약 3-5)-⑱ 現축산자원개발부 부지 첨단국가산단 조성 조기 추진
→ 첨단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국토부, '23.3.)
 - * (이재명정부) 충남천안공약 ③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첨단클러스터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시행령 제3조~5조에 따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필수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설정 ○ 축산법 제5조(가축개량목표의 설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가축개량총괄기관으로 가축개량목표 설정, 개량사업의 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등 수행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 의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 연구 수행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18~'27)
------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7.7~'18.1) 축산자원개발부 미래 종합발전방안 수립 및 이전타당성 분석
- ('18.5~12.) 이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이전후보지 선정
- ('19.3~9.)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지(함평군) 확정 및 업무협약(MOU)·합의각서(MOA) 체결
- ('20.2~11.) 예비타당성조사
- ('20.7~12.)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건축기획 추진
- ('21.09.)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2.05.)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업무 착수(한국부동산원)
- ('22.06.) 연구시설 기본설계(설계공모) 착수
- ('22.08.)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입안서 제출, 기본설계(계획설계) 완료
- ('22.09.)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04.) 보상 기본조사 완료분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23.07.) 보상협의회 구성
- ('23.11.)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4.01.) 이전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함평군)
- ('24.03.) 이주단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함평군)
- ('24.06.~08.) 기본설계 설계적정성 검토 심의(조달청)
- ('24.11.) 이전사업 총사업비 협의·조정 완료(기획재정부)
- ('24.11.) 대형공사(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 심의 완료 및 확정(국토부)
- ('24.12.)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기본설계(중간설계) 완료
- ('25.02.)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 따른 입찰 공고(조달청)
- ('25.04.)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고에 따른 사전 공개설명회 추진(조달청)
- ('25.08.) 기본설계 기술제안형 입찰 완료를 위한 공개설명회 추진(조달청)
- ('25.09.)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25.11.)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년 ~ 2029년(9년)
- 사업규모 : (면적) 5,889,090m², (연면적) 105,715m²
- 총사업비 : 843,616백만원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72	8,956	91,703	54,335	30,207	53,1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정액지원,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축산농가 및 축산업 종사자, 축산 관련 기관,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92) 축산연구정보화 (1232-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500
명칭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기술개발	축산연구(책임운영)	축산연구정보화 (정보화, 책임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축산연구정보화	1,066	1,234	1,234	1,061	△173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축산연구정보화) 최신 축산 기술정보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주요 축산정보서비스 운영·유지관리 및 기관 인프라 유지보수, 노후 사무자동화 기기 관리 등 지원
- (정보서비스 운영 및 개선) 축산정책 및 축산연구정보 제공을 위한 대표홈페이지 등 축산정보서비스 운영·관리
-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및 운영) 축산연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 및 정보화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6조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촉진을 위한 행정기관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정보화업무처리에 관한 훈령(농촌진흥청훈령 제1427호, 2024. 2. 2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의 정보화사업 추진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농촌진흥사업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축산법시행령 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축개량총괄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가축개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 생명공학육성법 8조(생명공학육성시책강구등) ①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

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000년 : 공공근로 사업(젓소생산관리DB)
- 2001년 ~ 2002년 : 국가단위 가축개체식별시스템 및 동물유전체정보시스템 구축
- 2004년 ~ 2007년 : 가축개량정보의 종합관리 정보서비스 구축
- 2007년 ~ 2008년 : 가축유전자원관리시스템 구축
- 2011년 : 축산물 HACCP 활성화 대책 추진계획 수립(농식품부, '11.11)
 - 농장단위 HACCP 기록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축산과학원)
- 2011년 ~ 2013년 : 축산업무지원시스템 구축(가축관리, 출입관리 등)
- 2013년 축산정보시스템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015 ~ 16년 : 웹사이트 관리개선계획에 따른 웹사이트 통폐합 추진(9개 → 4개)
- 2017년 ~ : 축산연구 정보시스템 통합 위탁,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2024년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으로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80	1,079	1,069	1,234	1,061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사업 수혜자 : 축산농가, 지자체, 대학, 일반인 등 대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Ⅱ.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세 입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기타재산 이자수입	14	34	34	14	14	△20	△58.8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계좌 등 이자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34,000	보조금 및 출연금 이자 34,000
2026예산	14,000	보조금 및 출연금 이자 14,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281	1,084	1,084	732	732	△352	△32.5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국고보조금 및 공동 연구과제 연구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환수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1,084,000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30,000 출연과제 연구비 정산잔액 954,000
2026예산	732,000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130,000 출연과제 연구비 정산잔액 602,000

2. 세출

사 업 명
(1) 고객현장지원 (7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300
명칭	기관운영 및 사업지원	고객현장지원(농특, 구조)	고객현장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고객현장지원	1,292	1,289	1,436	1,436	147	1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업기술상담·콜센터 운영)
 - 고객·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현장민원 해결 및 농업기술 종합민원 처리
- (안심영농 맞춤형 기술지원 및 기관운영)
 - 주산단지 영농현장의 반복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작목별 영농현장컨설팅」 운영
 - 재소자 및 출소예정자 대상 사회적가치 배려의 「취약계층 안심영농」 서비스 실시
 - 북한이탈주민의 농업기술 애로 현장해결, 자립 및 역량강화 등 성공적 영농 정착을 위한 「탈북민 안정적 영농정착지원」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기술 및 농작업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② 추진경위

- 2004 주요업무계획 보고(장관 '04. 1.17. 대통령 '04. 3. 8.)
 - 종합민원 콜센터 및 통합고객정보지원시스템 구축
- 농촌진흥청 개혁추진과제 외부공모 선정('05. 3. 우수상 수상)
 - 농촌진흥청 종합기술상담센터 설치
- 종합기술상담센터 설치 운영 기본계획 수립('05. 6.27.)
 - 기존 종합민원실 확대개편(9명→36명, 총무과→차장실 직속)
 - 퇴직자 인력풀 활용 : 분야별 박사급 전문가 20명을 상담위원으로 위촉
- 농업기술종합상담 지원을 위한 정규직제 신설('06. 7.)
- 농촌진흥사업의 비전 실현을 위하여 홍보강화 등 3대 과제 지속추진 지시('06.12.)
- 수요자 중심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한 농촌현장지원업무 기능제고 지시('09. 4.)
-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로 직제변경('13. 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200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6	1,235	1,357	1,289	1,4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2) 농작업재해예방(보조) (2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구조개선사업	100	101
명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0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농촌생활활력증진(농특, 구조)	농작업재해예방(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작업재해예방	2,505	3,020	5,070	5,070	2,050	6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작업 안전재해(부상·질병·장애·사망)부터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책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실시
-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핵심 농작업 재해예방 기술보급
-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안전실천 역량강화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및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 (사업관리운영)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관리, 평가, 성과확산, 대내외 협력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5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법에 관한 법률」 제7조(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방안),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동법 시행령 제7조(예방사업 실시 등 권한의 위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의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농어업인 안전작업 기술·연구 등의 진흥), 제39조(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재해에 대한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제23조(집행계획),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 제출 및 보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24.1~)에 따라 제16조(정부의 사업주 지원) 농가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업 위험성 평가 지원, 중대재해 예방기술지원

및 지도, 교육·홍보, 시설개설 등 예방사업 지원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농림어업인 산재 관련 연구결과, 농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특수한 산업적 특성을 지니므로 농림부, 농촌진흥청, 도원 및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기술 보유기관이 농업 안전관리를 시행, 감독, 지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04, 산업안전관리공단)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특별법 제정 및 국가 기본계획 추진('04)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청('05)
- 세이프팜(Safe Farm) 사업의 선진사례 및 운영체계 연구('05)를 바탕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06)
- 작목별 작업단계 유해요인을 분석, 개선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15~)
- 제1차('20~'2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시행('19.10월)에 따라 매년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22개 기관참여
- 제2차('24~'29)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 * 24개 기관 참여, 4대 부분 33개 세부추진과제(농촌진흥청 소관 21과제)
- 제4차('20~'24)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대응
 - * '농어업 사고' 분야 농작업재해예방, 농업현장안전관리 등 추진('21~, 3년 연속 '우수')
- 제5차('25~'29)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24.7)
- 제4차('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역량강화 및 예방사업 확대,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관리 기반 조성 등
- 제5차('25~'29)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24.7)
- 제4차('20~'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
 - *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역량강화 및 예방사업 확대,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관리 기반 조성 등
- 제5차('25~'29)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25.4)
 - *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보급 및 현장지원 강화, 농업인 안전실천 문화확산 등
-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위임 업무(안전재해예방사업 실시), 소규모 농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지원 시급(농가와 5인미만 농사업장은 고용부 지원 제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088	2,088	2,505	3,020	5,07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직접수행(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농업인단체(같은 작목이나 가축을 재배·사육하는 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417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122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시범	보조	지자체보조	2,290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61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보조	지자체보조	1,000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122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보조	지자체보조	1,175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61호, 61호

사 업 명
(3)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4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농어촌구조개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 개발센터	구조개선 사업계정	100	101
명칭	선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3	300
명칭	전문인력양성	영농기계화촉진(농특, 구조)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2,156	1,940	1,940	1,940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발농업기계화 확대, 자동화·정밀화되고 있는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삶의 질 향상
- (농업기계교육) 청년농업인, 귀농인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활용기술 실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론과 실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교육용농업기계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취급조작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교육운영)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등 제작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의 실시),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2(안전교육)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62년 : 농촌진흥청 발족과 함께 영농기계화 추진을 목표로 실시
- '70~'80년대 :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억제를 위한 정부의 농업기계화 시책 지원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확대
- '90~'05년 : 대형 농업기계 보급확대 및 관련 정비수리 기술교육 실시
- '05~'10년 : 전기전자, 유압시스템 등을 이용한 농업기계 보급 및 자가 정비수리 능력 제고 교육 실시
- '13년 :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종류 및 반영주기 기준 마련(기재부 협의)
 - * 기준을 근거로 시·도별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 '14년 이후 : 농업기계의 자동화·로봇화 및 융복합 기술보급과 발작물기계화 확대보급 추진
- '17년 이후 :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
- '21년 이후 :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및 현장실무교육 강화
- '23년 이후 : 농업기계 안전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9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1	2022	2024	2025	2026
사업비	2,156	2,156	2,156	1,940	1,9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기계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907	국비 50%, 지방비 50%	- 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제1항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1항 *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기준보조율 50%
교육용 농업기계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964	국비 50%, 지방비 50%	- 보조금법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 등)제1항 -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1항 *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기준보조율 50%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15	4	4	4	4	-	-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관리계좌 등 이자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4,000	보조금 이자 4,000
2026예산	4,000	보조금 이자 4,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458	1,111	1,111	1,111	1,140	29	2.6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정산잔액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1,111,000	보조금 정산잔액 1,111,000
2026예산	1,140,000	보조금 정산잔액 1,140,000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37	7	7	7	7	-	-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관리계좌 등 이자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7,000	보조금 이자 7,000
2026예산	7,000	보조금 이자 7,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814	339	339	464	464	125	36.9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정산잔액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339,000	보조금 정산잔액 339,000
2026예산	464,000	보조금 정산잔액 464,000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재산 이자수입	7	1	1	3	3	2	200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관리계좌 등 이자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1,000	보조금 이자 1,000
2026예산	3,000	보조금 이자 3,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21	52	52	103	103	51	98.1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정산잔액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52,000	보조금 정산잔액 52,000
2026예산	103,000	보조금 정산잔액 103,0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세종특별자치시계정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42	2	2	16	16	14	700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보조금 정산잔액

다. 2026년 세입예산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예산	2,000	보조금 정산잔액 2,000
2026예산	16,000	보조금 정산잔액 16,000

2. 세출

사 업 명
(1)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R&D, 보조, 지역자율) (1139-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지역자율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301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 고도화(R&D, 보조, 지역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고도화 (R&D, 보조, 지역자율)	1,448	1,448	5,128	5,128	3,680	25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 기술의 보급·확산(컨설팅)을 위한 연구기반(시설·장비)을 구축하여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1호, 2019.1.8.) 전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1.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대통령령 제34357호, 2024.3.26.)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25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법률 제19878호, 2024.1.2.)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법률 제20957호, 2025.5.27.)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법률 제204009호, 2024.3.26.)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추진전략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② 추진경위

- 지역농업 R&D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부문 과학기술-인재-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 높음
 - * 농림축산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농어가 소득증대, 식품안전 강국 구현 등은 지역농업 R&D와 밀접
-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작목 핵심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 확산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축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농가 집중 컨설팅을 통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 지역전략 특화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산업 발전 견인
- ‘지역 주도적 지역혁신시스템 확립’을 4대 전략, 19개 중점추진과제에 상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되, 지역 주도의 혁신체제로 전환을 강조(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 과학기술을 통한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체계 고도화,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강조(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3~’27)
- 국가R&D시스템 대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큰 비전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강조(국가R&D 혁신방안)
-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 확대’를 중점 어젠다로 제시하여, 지방농촌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명시(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18~’27)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마련(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1~’25)
- 지역 주력산업, 혁신역량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뉴딜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 강화(’22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과기정통부)

- '15년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농특회계) 내역사업 통합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몰대상사업 재검토를 통해 일몰관리혁신사업으로 선정('20년) 되어 '25년까지 일몰연장되었고, '23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계속지원 결정으로 '25년 추진 및 점검결과의 보완사항 이행여부 점검
- '26년부터 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의 내역사업(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이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900	8,900	1,448	1,448	5,12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 국고 50%, 지방 50%)
- 사업시행주체 : 연구정책국, 도 농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고도화	보조	지자체 보조	5,128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사 업 명
(2)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2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49	농촌지원국	지역자율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0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특, 지역자율)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보조, 지역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보조, 지역자율)	67,585	58,500	60,732	60,732	2,232	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농기술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생활 활력화 촉진 기반 조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간의 소득균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치료의 지원),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추진경위

- '10년부터 지역활력화작목 등 지역개발계정 5사업을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통합 추진해 오다가 '18년부터 2개사업 종료되고 3개사업 신규 발굴, '19년 2개사업 추가 신규 발굴, '20년 6개사업 종료
- *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18),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18), 청소년바른식생활실천지원('18),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19), 지역특화우수품종보급('19)
- * '20년부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농촌어르신복지생활실천시범, 농업활동안전사고예방 생활화, 농업인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 청소년바른식생활실천지원, 농업인조직체가공플랜트지원, 지역특화우수품종보급은 기획재정부 '중앙-지방 기능조정 대상사업으로 확정(2019.3.13.)'되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
 - '94년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새기술 실증시험포, 과학영농시설 설치 등 지원
 - '97년부터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교외 신축 이전, 첨단 지도장비 지원, 농업인교육시설 설치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농촌진흥기관 지원 추진
 - '23년부터 과학영농기술 시설 등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3,342	53,696	67,585	58,500	60,7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촌지도기 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60,73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9호, 61호

사 업 명
(3)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역자율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0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지특)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지역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전문인력양성	3,192	3,049	3,603	3,603	554	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 유도하고, 영농기술 향상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양성

-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쌀·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 교육을 통해 우리쌀·밀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단위 전문가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62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94년 농촌생활연구소 개편 이후 농촌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04년 농촌생활과학교육을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

- '05년 이후 우수농산물관리(GAP)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06년 예산구조 변경 :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 농업기술교육(수입대체경비)
- '06년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전문교육 시범교육과정 신설
- '08년 개방화에 대응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지원
- '13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과 농업인력개발교육 통합
- '19년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약판매관리인, 수출작물 ID경영체 등 대상 교육 추진
- '20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이관, 사업관리운영(직접) 신설
- '23년 청년창업농 희망자 대상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초기사업화 지원 추진
- '25년 예산구조 변경: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3 ~ 계속('26~, 회계이관) * '22~'25년 일반회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534	3,192	3,192	3,099	3,60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보조	지자체 보조	3,323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우리쌀·밀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28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사 업 명						
(4)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보조, 지역지원) (11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지역지원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30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보조, 지역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특화작목기술 개발(R&D, 보조, 지역지원)	6,316	6,316	9,624	9,624	3,308	52.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 비목별 분류(합계)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6,316	6,316	6,316 [6,151]	-	-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6,316]	-	-	9,6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특화작목 기술 중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의 전략적 연구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1호, 2019.1.8.) 전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1.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대통령령 제34357호, 2024.3.26.)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25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법률 제19878호, 2024.1.2.)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법률 제50957호, 2025.5.27.)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법률 제204009호, 2024.3.26.)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추진전략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② 추진경위

- 지역농업 R&D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부문 과학기술-인재-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 높음
 - *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농어가 소득증대, 식품안전 강국 구현 등은 지역농업 R&D와 밀접
-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작목 핵심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 확산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축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농가 집중 컨설팅을 통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 지역전략 특화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산업 발전 견인
- ‘지역 주도적 지역혁신시스템 확립’을 4대 전략, 19개 중점추진과제에 상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되, 지역 주도의 혁신체제로 전환을 강조(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 과학기술을 통한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체계 고도화,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강조(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3~’27)
- 국가R&D시스템 대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큰 비전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강조(국가R&D 혁신방안)
-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 확대’를 중점 어젠다로 제시하여, 지방농촌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명시(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18~’27)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마련(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1~’25)
- 지역 주력산업, 혁신역량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뉴딜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 강화(’22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과기정통부)
- ‘15년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농특회계) 내역사업 통합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몰대상사업 재검토를 통해 일몰관리혁신사업으로 선정(’20년)되어 ‘25년까지 일몰연장되었고, ‘23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계속지원 결정으로 ‘25년 추진 및 점진적결과의 보완사항 이행여부 점검
- ‘26년부터 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의 내역사업(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이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417	8,319	6,316	6,316	9,6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 국고 50%, 지방 50%;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연구정책국, 도 농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연구소,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보조	지자체 보조	9,624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사 업 명
(5) 신기술보급사업(보조) (2131 - 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역지원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1	301
명칭	농업신기술 보급	신기술보급사업(지특, 지역지원)	신기술보급사업(보조, 지역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신기술보급사업(보조)	-	38,907	38,907	38,853	△54	△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기술보급사업) 농업신기술의 보급·확산으로 농가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농촌진흥 촉진
- (농업신기술시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하고, 품질고급화, 안정생산, 미래성장, 산업 기반 구축 기술 등 시범사업장을 인근농가에 새기술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가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 경쟁력 증진 기여
- (성과분석·평가 및 운영지원) 기술정착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 현장 기술지원, 연사회 운영 등으로 신속한 기술확산과 환류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제17조(농촌지도사업의 평가)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25조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62년부터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을 목적으로 추진
- 60·70년대 : 식량자급을 위한 식량증산 위주의 생산기술 투입시범
- 80·90년대 : 노동력 절감 기술시범 및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 2000년대 : 소비자 중심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가공기술, 친환경농업기술, 농촌생활·도시생활농업, 농산물품질고급화시범, 에너지절감 시범
- 2010년 이후 : 고품질안전기술, 비용절감기술, 미래성장기술 등 농업인 수요를 고려한 기술시범
- 2018년 이후 : 체계화된 종합기술로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 사업 확대
- 2021년 이후 : 품질고급화, 안정생산, 미래성장, 산업기반구축 기술 등 농업여건 변화 대응

-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및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등으로 신기술의 신속한 확산
- 2025년 이후 : 안전 먹거리 공급 기술, 기후변화 대응 기술, 미래 유망 기술, 산업 지원 기술 중점 보급 및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계속사업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8,907	38,9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신기술 시범	보조	지자체 보조	37,78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사 업 명
(6)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2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역지원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4	301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6차산업활성화지원 (지특, 지역지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 (보조, 지역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3,940	3,672	3,245	2,297	△1,375	△37.4

나. 사업설명자료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제12조(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② 추진경위

- ('07.12)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농정의 핵심으로 대두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및 『농업·농촌·식품기본법』 개정
- ('08.3)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 및 농업인 창업 활성화가 농정과제로 대두
- ('09)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중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포함
- ('10)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중 파일럿 플랜트 확충 및 창업교육을 위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포함하도록 함
- ('14.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장관 주재하에 우리 청 및 8개 부처가 공동 참여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 함
- ('15.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15) 농식품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기반 확대 필요(VIP 국정운영계획 등)
- ('1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12.)에 따른 농산물 가공, 농촌 체험, 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17.12) 농가형 가공상품 판로지원을 위한 온라인쇼핑몰(위메프) 협력체계 구축(MOU)
- ('17.12)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 패키지 지원
- ('20.2)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 ('20.12)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21.11) HACCP 인증 의무화 전면시행 대응 한국식품관리인증원 업무협력 강화(MOU)
- ('21.12)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료, 빵떡류 등 HACCP 인증 의무화 전면시행
- ('21.12)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 ('20.1)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 ('20.12)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2.7)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22) 「국정과제 70-1」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 (농진청 소관)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 지원
- ('23.3) 국정과제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 추진
- ('24.3) 국무조정실 주재 외청장 회의시 교육정책 운영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동참하는 노력을 하길 당부
- ('25.6) 농촌관광, 소규모 농민가공 지원 등 새정부 공약집 포함
 - * 관련공약: (B-2-4-14) 관광사업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B-2-4-20)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의 인재를 양성(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25.8) 「국정과제 70-3」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

* (농진청 소관) 농촌관광 코디네이터 육성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89	7,839	3,951	3,672	2,297

- 기타 : 55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국비50%, 지방비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산물상품개발 기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5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보조	지자체 보조	6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모델 시범	보조	지자체 보조	75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61호, 122호

사 업 명						
(7) 농촌자원소득화지원 (2234-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역지원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4	305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6차산업활성화지원 (지특, 지역지원)	농촌자원소득화지원 (보조, 지역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요구	조정(B)	(B-A)	(B-A)/A
농촌자원 소득화기술지원	2,960	2,185	2,185	1,685	△500	22.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치유농업센터 구축) 동 사업은 지역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치유농업자원 활용 교육·실습공간 및 치유농업서비스 공간 조성
-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및 취약계층에게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을 육성하는 것임
-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동 사업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경문화자원*을 보유한 마을을 대상으로 전시·판매·체험 기반조성 등 소득화 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농경문화자원 : 전통 공동체 및 유물, 전통농업, 전통행사, 마을숲, 농촌경관, 세시풍습 등

- (사업관리 및 평가) 동 사업은 농경문화자원,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관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업대상자 교육, 매뉴얼 제작, 성과평가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구 분		내 용
농촌진흥법	제12조	◦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농촌진흥청장은 매년도 연구개발 성과 중 농업인 등에게 기술 보급과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6조	◦ (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 (연구개발·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치유농업시설의 운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23.6. 신설)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30조 의 2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전 및 활용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 : 2020 ~
- (농경문화자원)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조성
 - 국회 정책포럼 도농융합상생분과 창립총회('17.6월)
 - 농업·농촌의 교육적 가치 실현 확산 국회 토론회 개최('17.7월, 203명)
 - 지역 관광 육성 정책에 따른 농촌 체험·관광분야 발전방안 세미나('18.10월)
 - 제4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과제 포함
 - *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농경문화자원의 보전·관리방안 국제적 협력
 - * '농업유산시스템 보전관리 기술 도입' 국제농업기술협력사업('18~'21)
 - * 농업유산 보전·가치 확산 농진청-UN대 공동 국제심포지엄('21.11.)
- (치유농업) 농업·농촌의 치유적 자원을 활용한 국민 치유 서비스 지원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13~), 개발기술 보급확산('17~)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장관 지시('16.4.20.)
 - R&D 역량 결집과 협력 연구를 위한 치유농업 연구협의체 운영('16.5월~)
 - * 치유농업 신규시장 및 일자리 창출 연구협의체(원예, 축산, 곤충, 음식, 관광 등)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20.3), 시행('21.3)
 -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업무협약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20.7~, 2건)
 - * 복지부('20.7) : 치매예방사업 협력, 소방청('20.10) :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지원
 -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과제(야외 치유프로그램 발굴·확산) 포함('21.1)
 - 국회 제1차 농업-복지연계 포럼 개최('21.4.6, 국회 농복연계포럼)
 - 제1차('22~'26)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2.4)
 - * (전략 2) 확산을 위한 거점기관 구축(17개소) 및 치유농업시설 확대(800)
 - * (전략 4) 치유농업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
 - 치유농업-복지정책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22.11), 양당 복지정책 수석전문위원 참여 세미나 개최('23.1)

- * 정신건강, 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와 치유농업 연계 필요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치유농업법 개정 시행('24.6.21)
-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치유목적 체험장 조성 등 새정부 공약집 포함('25.6)
- * 공약: (B-3-5-11)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청(소)년, 중장년, 노인, 1인가구 등 주요 집단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치유목적 원예활동 등 체험장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860	2,960	2,960	2,185	1,685

- 기타: 광의의 개념으로 치유농업서비스의 수혜대상은 모든 국민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농촌마을,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 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치유농업 센터 구축	자본 보조	지자체	1,6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61호, 122호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자본 보조	지자체	240백만원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61호, 122호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자본 보조	지자체	1,05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61호, 122호

사 업 명
(8) 농산업교육훈련지원 (2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역지원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1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일반)	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4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전문인력양성	3,171	3,223	6,875	6,875	3,652	11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전문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 및 새로 개발된 기술의 영농현장 실용화 촉진
-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동 내역사업은 지역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장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농장경영 및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품목별 수요자 맞춤형 중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의 창업 자원으로 활용하여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모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농촌의 新성장동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민관협력 농촌 공익활동 지원사업)** 농업인학습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농업·농촌 공익활동 증진
- **(수출농산물농약안전사용실천교육)** 동 내역사업은 신선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실현을 통한 수출증대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경영체에게 수출국별(일본·대만·홍콩 등)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의무교육 추진과 수출작목별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추진
- **(농약판매관리인교육)** 동 내역사업은 농업인의 올바른 농약사용 유도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약 판매관리인에게 농약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기준 교육과 미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
- **(사업관리운영)** 동 내역사업은 농촌진흥공무원 및 농업인 등 전문인력양성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전문지도연구회 평가를 통한 포상 등을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경비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 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②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입 식물방제업자에게,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밖의 농약등의 사용자에게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른 판매관리인을 지정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62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94년 농촌생활연구소 개편 이후 농촌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04년 농촌생활과학교육을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
- '05년 이후 우수농산물관리(GAP)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06년 예산구조 변경 :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 농업기술교육(수입대체경비)
- '06년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전문교육 시범교육과정 신설
- '08년 개방화에 대응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지원
- '13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과 농업인력개발교육 통합
- '19년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약판매관리인, 수출작물 ID경영체 등 대상 교육 추진
- '20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이관, 사업관리운영(직접) 신설
- '23년 청년창업농 희망자 대상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초기사업화 지원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7 ~ 계속('26년~, 회계 이관) * '22~'25년 일반회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3,776	12,358	3,171	3,173	2,875

- 기타: 농촌진흥청 1, 도농업기술원 9, 시군농업기술센터 156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촌진흥공무원,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지방)	보조	지자체 보조	2,368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통합관리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0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사 업 명
(9)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R&D, 제주, 지역자율) (1140-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제주특별	100	101
명칭	특별회계			자치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0	301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 (R&D, 제주, 지역자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특화작목연구 기반고도화(R&D, 제주, 지역자율)	280	280	600	600	320	114.3

<이관 내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확대로 농촌진흥청 소관 내역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2024결산: 280 2025예산: 280)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내 제주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신규 세부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사업으로 편성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600
·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
·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	-	-	-	-	-	-	-	-	-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6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6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600
· 지역농업연구 기반고도화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80	280	280 [273]	-	-	280	280	280 [280]	280	280 [280]	-	-	-
·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	-	-	-	-	-	-	-	-	-	-	-	6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	-	-	-	-	-	-	-	-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우수 기술의 보급·확산(컨설팅)을 위한 연구기반(시설·장비)을 구축하여 지역전략작목의 부가가치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산업 활성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1호, 2019.1.8.) 전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1.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대통령령 제34357호, 2024.3.26.)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25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법률 제19878호, 2024.1.2.)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법률 제20957호, 2025.5.27.)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법률 제204009호, 2024.3.26.)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추진전략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② 추진경위

- 지역농업 R&D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부문 과학기술-인재-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 높음
 - * 농림축산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농어가 소득증대, 식품안전 강국 구현 등은 지역농업 R&D와 밀접
-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작목 핵심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 확산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축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농가 집중 컨설팅을 통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 지역전략 특화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산업 발전 견인
- ‘지역 주도적 지역혁신시스템 확립’을 4대 전략, 19개 중점추진과제에 상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되, 지역 주도의 혁신체제로 전환을 강조(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 과학기술을 통한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체계 고도화,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강조(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3~’27)
- 국가R&D시스템 대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큰 비전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강조(국가R&D 혁신방안)
-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 확대’를 중점 어젠다로 제시하여, 지방농촌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명시(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18~’27)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마련(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1~’25)
- 지역 주력산업, 혁신역량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뉴딜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 강화(’22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과기정통부)

- '15년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지역전략작목산학협력사업 및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농특회계) 내역사업 통합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몰대상사업 재검토를 통해 일몰관리혁신사업으로 선정('20년)되어 '25년까지 일몰연장되었고, '23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계속지원 결정으로 '25년 추진 및 점검결과의 보완사항 이행여부 점검
- '26년부터 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의 내역사업(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이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60	560	280	280	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 : 국고 50%, 지방 50%)
- 사업시행주체 : 연구정책국, 도 농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고도화	보조	지자체 보조	6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사 업 명
(10)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제주, 지역지원) (1140-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제주특별	100	101
명칭	특별회계			자치도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40	302
명칭	농업기초기반 및 실용화기술개발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제주, 지역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중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특화작목기술 개발(R&D, 제주, 지역지원)	204	204	590	590	386	18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액	불용 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 비목별 분류(합계)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04	204	204 [202]	-	-	204	204	204 [204]	204	204 [204]	-	-	5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특화작목 기술 중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특화작목연구소 중심의 전략적 연구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1호, 2019.1.8.) 전조항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은 소유하고 있는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법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실시(법률 제19878호, 2024.1.2.)

제7조(연구개발사업의 실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은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대통령령 제34357호, 2024.3.26.)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사업계획에는 공동연구사업 또는 공동연구과제의 내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및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및 그 정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촌진흥법 제3조 지방농촌진흥기관, 제25조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법률 제19878호, 2024.1.2.)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① 정부는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②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초광역권의 초광역권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초광역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투자 유치 촉진, 집적(集積) 및 기반 확충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초광역권산업 및 제4항에 따른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법률 제204009호, 2024.3.26.)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추진전략 IV.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② 추진경위

- 지역농업 R&D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부문 과학기술-인재-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농업·농촌 관련 국정과제와 직·간접적 관련성 높음

* 농림축산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농어가 소득증대, 식품안전 강국 구현 등은 지역농업 R&D와 밀접

-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전략작목 핵심기술 개발 및 영농현장 확산 지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축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농가 집중 컨설팅을 통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 지역전략 특화농업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관·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농산업 발전 견인
- ‘지역 주도적 지역혁신시스템 확립’을 4대 전략, 19개 중점추진과제에 상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하여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되,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로 전환을 강조(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8~’22)
- 과학기술을 통한 자생적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체계 고도화, 지역혁신주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강조(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3~’27)
- 국가R&D시스템 대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큰 비전 속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강조(국가R&D 혁신방안)
- ‘지역농업 특성화 기반 확대’를 중점 어젠다로 제시하여, 지방농촌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무를 명시(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18~’27)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 마련(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21~’25)
- 지역 주력산업, 혁신역량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뉴딜과 연계한 전략적 투자 강화(’22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과기정통부)
- ‘15년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지역전략작목산화협력사업 및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농특회계) 내역사업 통합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일몰대상사업 재검토를 통해 일몰관리혁신사업으로 선정(’20년)되어 ‘25년까지 일몰연장되었고, ‘23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계속지원 결정으로 ‘25년 추진 및 점검결과의 보완사항 이행여부 점검
- ‘26년부터 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사업의 내역사업(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이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고도화)으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5	421	204	204	59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 국고 50%, 지방 50%)
- 사업시행주체 : 연구정책국, 도 농업기술원
- 사업 수혜자 :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보조	지자체 보조	59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사 업 명						
(11)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22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49	농촌지원국	제주특별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촌진흥청		자치도계정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5	300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특, 제주)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보조, 제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보조, 제주)	1,900	1,900	2,600	2,600	700	3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 농촌지도기반조성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 비목별 분류(합계)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 농촌지도기반조성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1,900	1,900	1,900 [1,778]		-	1,900	1,900	1,900 [1,871]	1,900	1,900 [1,871]	-	-	2,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
영농기술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생활 활력화 촉진 기반 조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간의 소득균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치료의 지원),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추진경위

- '10년부터 제주 군특회계 사업중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광특회계 제주특별자치도계정(포괄보조사업)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으로 통합 추진
 - * '20년부터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제주계정의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농업전문인력양성, 농기계안전교육사업, 농가경영개선지원은 기획재정부 '중앙-지방 기능조정 대상사업으로 확정(2019.3.13.)'되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었음.
- 농촌지도기반조성
 - '10년부터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 과학영농시설 지원 시설 및 기술 보급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350	650	1,900	1,900	2,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제주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제주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촌지도기 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2,6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9호, 61호

사 업 명
(12)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49	농촌지원국	제주특별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촌진흥청		자치도계정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4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 (지특, 제주)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제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제주)	-	-	75	75	75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 액 [실 집행 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75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	-	-	-	-	-	-	-	-	-	-	-	-	72
·위팔말농생태휴식농업	-	-	-	-	-	-	-	-	-	-	-	-	-	3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75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	-	-	-	-	-	-	-	7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	75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	-	-	-	-	-	-	-	-	-	-	-	-	72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	-	-	-	-	-	-	-	72
·위팔말농생태휴식농업	-	-	-	-	-	-	-	-	-	-	-	-	-	3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	-	-	-	-	-	-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 유도하고, 영농기술 향상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양성

-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쌀·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 교육을 통해 우리쌀·밀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단위 전문가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62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94년 농촌생활연구소 개편 이후 농촌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04년 농촌생활과학교육을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

- '05년 이후 우수농산물관리(GAP)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06년 예산구조 변경 :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 농업기술교육(수입대체경비)
- '06년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전문교육 시범교육과정 신설
- '08년 개방화에 대응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지원
- '13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과 농업인력개발교육 통합
- '19년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약판매관리인, 수출작물 ID경영체 등 대상 교육 추진
- '20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이관, 사업관리운영(직접) 신설
- '23년 청년창업농 희망자 대상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초기사업화 지원 추진
- '25년 예산구조 변경: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계속('26년~, 회계 이관) * '22~'25년 일반회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7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보조	지자체 보조	7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우리쌀·밀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3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사 업 명
(13)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세종) (22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49	농촌지원국	세종특별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촌진흥청		자치시계정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7	301
명칭	지역농업특성화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지특, 세종)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보조, 세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보조, 세종)	500	400	400	125	△275	△6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5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 농촌지도기반조성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 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 농촌지도기반조성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0	500	500 [236]	-	-	-	400	- [-]	400	- [-]	-	400	1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
영농기술 시설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촌생활 활력화 촉진 기반 조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9조(지역간의 소득균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제14조(농어업인의 질환의 예방·치료의 지원),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 농촌진흥법 제12조(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농촌진흥법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② 추진경위

- 2015년부터 지역발전회계(생활기반계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계정(포괄보조사업)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으로 분리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90	-	500	400	1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농촌지도기 반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125백만원	50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사 업 명
(14) 농업전문인력양성 (24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	49	농촌지원국	세종특별	100	101
명칭	특별회계	농촌진흥청		자치시계정	농림수산	농업·농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5
명칭	전문인력양성	농업인력양성및지원 (지특, 세종)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세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 세종)	-	-	17	17	17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농촌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 유도하고, 영농기술 향상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양성

- (우리쌀·밀이용소비촉진기술교육)

농업인 및 농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우리쌀·밀 소비촉진을 위한 다각적 교육을 통해 우리쌀·밀 소비문화 정착 및 지역단위 전문가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 제19조(교육훈련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육훈련과정 등 연구·개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
- 제21조(평생교육진흥사업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정부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62년 새기술 보급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추진
- '94년 농촌생활연구소 개편 이후 농촌생활과학 전문기술 교육훈련 실시
- '04년 농촌생활과학교육을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

- '05년 이후 우수농산물관리(GAP)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06년 예산구조 변경 : 농촌생활과학기술교육 → 농업기술교육(수입대체경비)
- '06년 도시민 전원농업 교육 및 직업훈련전문교육 시범교육과정 신설
- '08년 개방화에 대응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위한 농업인대학지원
- '13년 농업전문인력양성사업과 농업인력개발교육 통합
- '19년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농약판매관리인, 수출작물 ID경영체 등 대상 교육 추진
- '20년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직접) 농업과학기술교육으로 이관, 사업관리운영(직접) 신설
- '23년 청년창업농 희망자 대상으로 R&D 연구개발 기술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초기사업화 지원 추진
- '25년 예산구조 변경: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년~계속('26년~, 회계 이관) * '22~'25년 일반회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정편성한 연도에는 추정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 수혜자 : 농업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보조	지자체 보조	15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
우리쌀·밀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	보조	지자체 보조	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58호